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2) 중대규모 공연장

2026. 0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

제1장

안내서 활용 안내

-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구분..... 5
-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8

제2장

참고 법령 및 규정

- 1. 공연법..... 13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3
- 4. 산업안전보건법..... 24

제3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처리 절차

- 1. 재해대처계획 신고..... 27
- 2.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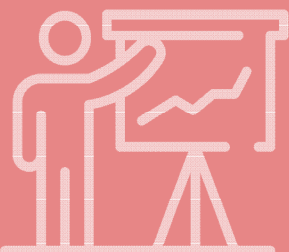
제4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가이드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3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6
- 3.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47
-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61
- 5.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7
- 6.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86

[별첨1] 재해대처계획 작성 양식

[별첨2] 재해대처계획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서 활용 안내

-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구분 _5
-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_8



제1장 안내서 활용 안내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구분

1)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별 주요 포함 내용

- (소규모 공연장) 객석 수 500석 미만의 등록 공연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심으로 안내
- (중·대규모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의 등록 공연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이하 공연장 외 공연))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구분	소규모 공연장	중·대규모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	○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
-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	○
- 안전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	○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	○
-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	○
-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	○	○
- 공연계획서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
* 객석 수 500석 미만인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의무가 없으므로, 안전교육 계획 중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계획만 안내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활용 방법

1 소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미만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주 관리 인력이 부족한 공연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관 공연 등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 통상적으로 객석 수 500석 미만의 민간 공연장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안전 법률에 관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객석 수 500석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주 관리조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상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은 “중·대규모 공연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2 중·대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이상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주 관리 조직과 인력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 통상적으로 객석 수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안전 법률에 관한 내용과 관계 법령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객석 수 500석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주 관리 조직과 인원이 부족하여 자체 인력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공연장인 경우, 소규모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에서 대관 공연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단, 500석 이상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전체 포함해야 함)

3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

-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의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올바른 관리 조직 구성과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무대시설 및 장치와 많은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의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실내 시설 : 체육관, 전시장, 강당 등
- 실외 장소 : 운동장, 광장, 공원, 해수욕장 등이 있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주체와의 공동 신고를 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1천명 이상의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공연을 하려는 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시설 대관 및 장소 사용승인 시 안전 고려 사항)

2.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주요 내용

1) 재해 유형별 예방 대책 수립 가이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에서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전문 공연장(등록 공연장)에서의 재해 유형과 공연을 위한 임시 구조물 및 장치 설치로 운영되는 공연(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에서의 재해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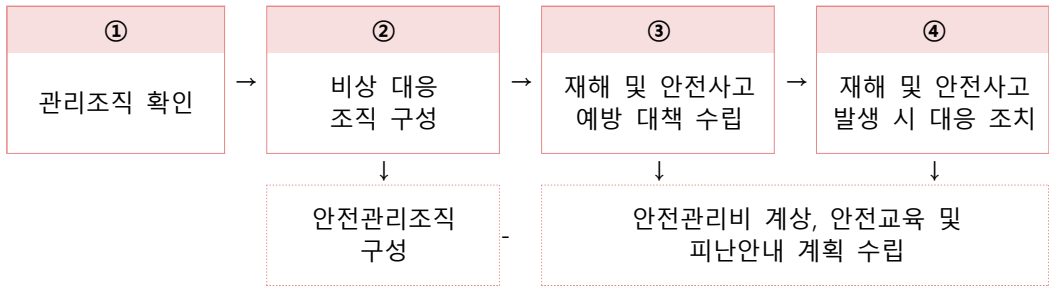
재해 유형	유형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주요 내용
화재	- 건축물 일반 화재 - 전기 화재 - 공연 특수효과 및 소품으로 인한 화재	- 일반 화재, 전기 화재, 특수효과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지진	- 무대공간에서 무대시설 낙하, 전도 - 객석 및 관객 대기 공간에서의 구조물 낙하, 전도	- 지진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관리 계획
무대시설 등 안전사고	- 그리드 및 갤러리에서의 낙하 - 상부 무대시설 충돌, 낙하 - 하부 무대시설 추락, 충돌 - 무대조명·음향 시설 낙하, 전도 - 전기설비 과부하	- 공연장 자체 무대시설인 상부 무대시설(장치봉, 조명봉 등), 하부 무대시설(승강무대, 연주승강무대 등)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 무대조명·음향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특수효과 안전사고	- 불꽃 및 화염 효과로 인한 안전사고(화재, 화상 등) - 연무 효과로 인한 안전사고(질식, 미끄러짐 등) - 레이저 효과로 인한 안전사고(안구 손상, 화상 등) - 드론 추락	- 특수효과 사용 시 피난안내에 관한 규정 안내 - 특수효과별 운용 및 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
무대세트 및 장치 안전사고	- 무대세트 및 장치와 사람의 충돌 - 무대세트 및 장치에서 추락 - 작업자 안전사고	- 공연장에서 무대세트 및 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정보(하중, 치수, 위험물 등)에 관한 사항 - 공연단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안전 관리 사항(이동 동선, 무대장치 위험요인, 연출 안전, 보호구 착용 등)

2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재해 유형

재해 유형	유형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주요 내용
화재	- 구조물 및 시설 일반 화재 - 전장품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 공연 특수효과로 인한 화재	- 일반 화재, 전기 화재, 특수효과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지진	- 지진으로 구조물 붕괴, 전도, 낙하 등에 의한 인명 사고	- 지진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관리 계획
악천후	- 폭우로 인한 구조물 붕괴 및 감전 사고 -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사고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 폭우, 강풍, 폭염 등 기상이변에 대한 관리 계획
구조물 사고 (특수효과 포함)	- 무대 및 조명타워 붕괴, 전도에 의한 인명 사고 - 무대장치 추락, 낙하, 부딪힘 등에 의한 인명 사고 - 특수효과에 의한 인명 사고(불꽃, 화염, 연무, 레이저, 고압수 등)	- 가설구조물(무대 및 조명타워 등)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 특수효과 장치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계획 - *특수효과 범위 : 불꽃, 화염, 연무, 레이저, 고압수, 트랩 등
관객 사고	- 관객 혼잡 사고(혼잡에 의한 넘어짐, 압사 등) - 기타 관객 사고(넘어짐, 관객 건강 이상, 미아 사고 등) - 돌발 사고(관객 난입, 아티스트 돌발 행동 등)	- 객석구역(좌석, 통로, 난간, 계단 등) 위험 요인 관리 계획 - 공연 돌발 상황(관객 난입, 출연자 돌발행동 등) 예방 관리 계획 - 다중운집 발생 해소를 위한 관리 계획(수용인원 제한, 분산 입·퇴장 등) - 다중운집 인파 시, 관객 인명피해를 위한 대처 방안(관객 통제, 피해 방지 조치 안내 등)

2) 중·대규모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시 고려 사항

중·대규모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에서는 공연법 제11조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되었으며,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1 관리조직 확인

-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뤄지는 무대와 관객이 이용하는 로비, 객석구역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조직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연장 내부의 무대시설과 객석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건축 등 공연장 시설 설비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와 별도의 안전 전문부서가 있거나, 비상시 전사 대응 부서 조직(방재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비상 대응 조직 구성

- 공연장에서의 대형 화재 등 비상시 전사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하므로, 무대 관리조직을 포함하여, 건축 시설물의 전사적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비상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비상 대응 조직이 구성되었다면, 조직별 책임자와 소속 직원의 연락처와 임무를 작성하는 등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 연락망을 주요 장소에 비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또한,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는 안전관리조직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통해 총괄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공연장에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 및 사고는 다음과 같다.

주요 재해 및 사고 유형	빈도	피해 정도	주요 사고사례
화재	비교적 낮음	치명적 피해	- '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53명 사망, 76명 부상) - '07년 예술의전당 화재(약 180억원 규모 피해)
지진	비교적 낮음	치명적 피해	- '16년 지진으로 공연장 객석 천장 마감재 파손 - (공연이 없는 기간으로 인명 피해는 없음)
무대시설, 조명·음향 기구 안전사고	비교적 높음	세부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름	- '03년 스피커 설치 중 낙하 사고(1명 사망) - '07년 스피커 철거 중 낙하 사고(1명 사망) - '18년 승강무대 추락 사고 1건(1명 사망) - '25년 연주승강무대 추락 사고 2건(3명 부상)
무대장치, 특수효과 안전사고	비교적 높음		- '23년 무대장치와 충돌 사고(치료 중 1명 사망) - (해외) '18년 이산화탄소 노출 질식(2명 부상) - (해외) '25년 공연용 불꽃으로 인한 화재(59명 사망)

-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대책이 요구되며, 본 안내서를 통해 주요 관리 항목별 관리 계획의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공연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교육, 현장 감독, 안전 절차 이행, 시설 개선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사고 항목별로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하여, 초동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공연장뿐만 아니라 사고의 영향을 받는 구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 법령 및 규정

1. 공연법 _13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_20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_23

4. 산업안전보건법 _24



제2장 참고 법령 및 규정

[참고]

참고 법령 및 규정은 본 안내서가 개발된 시점(25년 12월)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니,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1)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법 제10조의2)

-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자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장 등록 시 신고)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및 변경)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보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재신고)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과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객석 수 500석 이상인 등록된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운영 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고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 (안전관리비의 용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공연법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 (사용내역서 제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조직

객석 수 500석 이상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담당자)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 공연장의 객석 수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객석 수 500석 이상 1천석 미만 공연장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객석 수 1천석 이상 공연장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안전관리조직 업무 수행 기록)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안전교육 강사 요건) 위의 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자 안전교육 : 자격 요건 없음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전교육 내용) 안전교육의 내용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다.

4 피난안내도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설치 위치)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 내용)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크기) 피난안내도는 B4(257 mm × 364 mm) 이상의 크기로 하며,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m² 이상인 경우에는 A3(297 mm × 420 mm)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재질)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설치 방법)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 (언어)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5 피난안내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난안내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피난안내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 (포함 내용) 피난안내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언어)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은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6 사고보고의무

공연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한 사고 범위)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의 낙하·추락·전도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해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사고 보고 방법)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4) 방화막 설치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화막 설치 대상)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치가 제외될 수 있다.)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방화막 설치 제외) 좌석 수 1천석 이상 공연장 중 위의 방화막 설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일 경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방화막의 성능 기준) 방화막의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그 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서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 등 참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대규모 공연장이 주로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을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체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무)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규정

1 방염 대상 물품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은 방염성능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 ①전시용 합판, ②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③암막·무대막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합판이나 목재

2 방염성능의 검사 및 확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와 관련한 방염성능의 검사 및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받은 기술원은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방염성능기준이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기술원은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카펫, 소파·의자, 섬유판
합격표시 명칭 : 군청색 스티커
* 카펫, 소파·의자, 섬유판에 적용되는 군청색 스티커는 기존과 동일
방 KFI 염 AA AA 00000 (30mm x 20mm)

2 합성수지 벽지류*
합격표시 명칭 : 홀로그램 은색 스티커
* 비닐벽지, 인테리아필름, 천연재료 벽지, 합성수지 시트
방 KFI 염 TA AA 00000 (15mm x 15mm)

3 합판, 목재, 합성수지판, 목재 블라인드
합격표시 명칭 : 홀로그램 금색 스티커
* KFI 이니셜이 적용된 금색 홀로그램이 이면에 적용됨
방 KFI 염 GA AA 00000 (15mm x 15mm)

4 섬유류 (커튼, 암막, 블라인드 등)
합격표시 명칭 : 세탁가능 / 세탁불가
* 세탁가능 : 커튼, 암막
* 세탁불가 : 벽포지, 무대막, 포제 블라인드
방 염 HA AA 00000 (25mm x 15mm)
방 염 HA AA 00000 (25mm x 15mm)

방염성능검사가 합격표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 검사)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¹⁾는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함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제5조제5항 관련)

방염처리자		특별시·광역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
처리방법		
면적	m ²	
방염성능검사	제 호 (년 월 일)	

비고

1. 크기: 가로 10cm, 세로 4cm
2. 바탕: 흰색
3. 글자: 검은색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1) 관할 지자체 : 지역소방재난본부 소속 관할 소방서에 해당함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 법을 적용받는 특수건물의 범위

- 특수건물이란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공연장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2)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보험 가입의 의무

-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화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1) 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설 안전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작업 안전) 사업주는 하역, 운반, 해체, 중량물의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주의 작업 중지 등

- (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다.)
- (도급인의 안전관리 역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 점검
 - 특별안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특별안전교육의 실시 확인
 -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화재,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처리 절차

- 1. 재해대처계획 신고 _27
- 2.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_30



제3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처리 절차

1. 재해대처계획 신고

1) 신고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
되, ①공연장운영자작성사항, ③운영자, ④공연장을 공연장 등록 정보에 맞춰 기재하
고,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5)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11. 1.>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 신고 [] 공연 []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	-----	----------	----

① 공연장업자작성사항	③ 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④ 공연장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업 [] 수탁 [] 양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개관일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m ²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m ² (평)		
			무대기계·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m ²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② 공연시작성사항	⑤ 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⑥ 공연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m ²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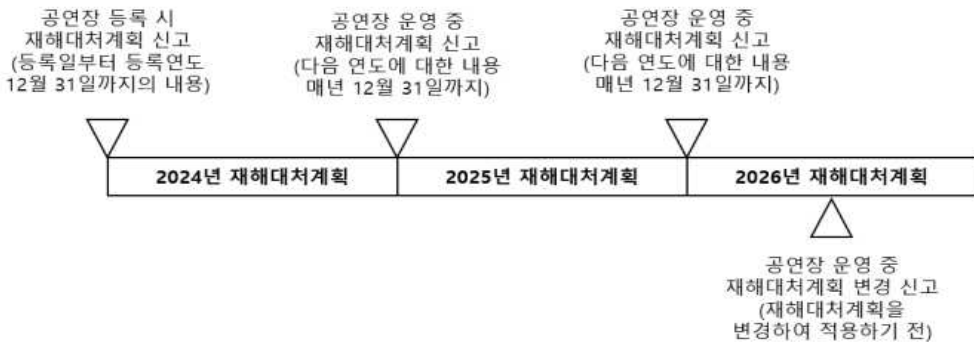
⑦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공연장—[]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변경 신고)을 신고합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2) 신고 방법

-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해예방조치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된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접수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처리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월 마지막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미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연장은 개별 공연장별(등록된 공연장만 해당)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연장 등록 정보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복합 공연시설에서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마다 개별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복합 공연시설에서 여러 공연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등록된 공연장 각각 별개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예)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작성 및 신고)

3) 변경 신고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⑦변경사항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⑦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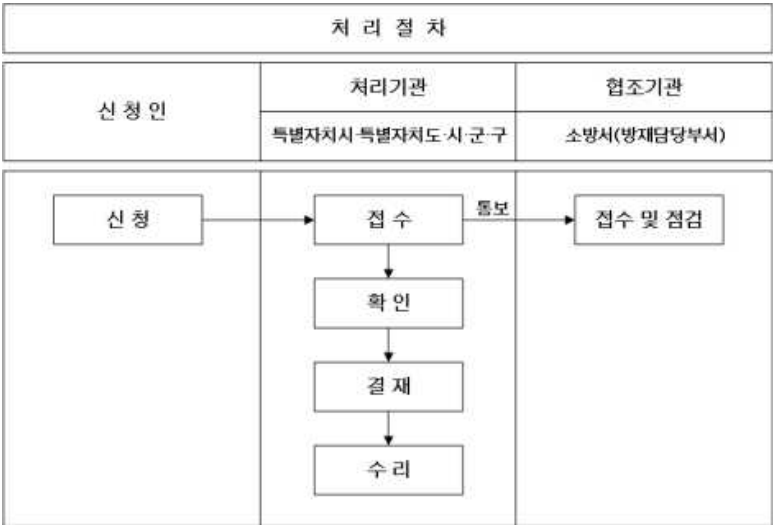
2.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1) 재해대처계획 적정성 검토

-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신고 전, 그 내용이 실천 가능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공연장의 운영정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시 본 안내서 [별첨]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2) 재해대처계획 신고 처리 절차

-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확인/결재/수리를 통해 행정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문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관할 처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이러한 요구 절차에 응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재해대처계획 작성 가이드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_33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_36
 3.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_47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_61
 5.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_77
 6.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_86

제4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가이드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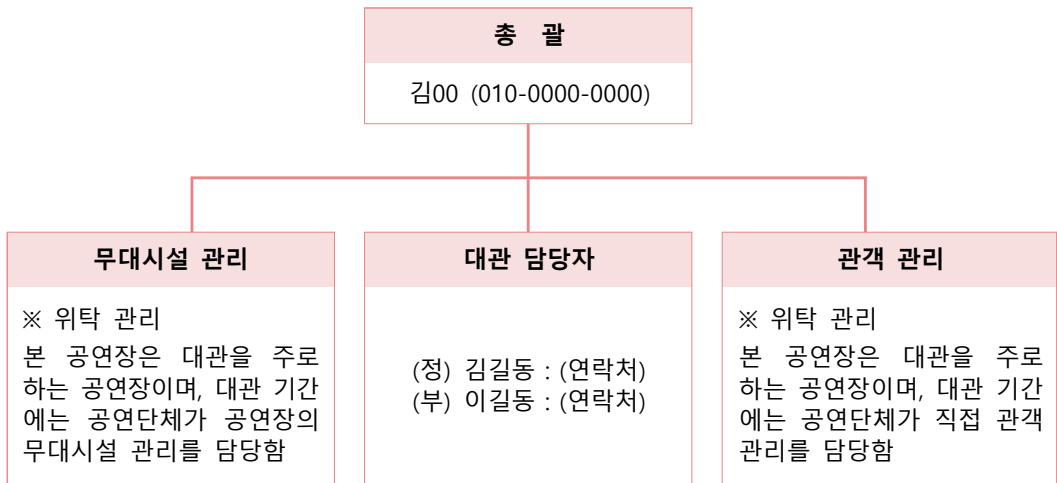
1) 관리 조직도

- 조직도란 조직 내의 지휘, 명령 등의 계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표를 말한다. 작성할 때는 기능별 업무를 구조화한 표 형식을 권장한다. 조직도 작성 시에는 각 조직의 기능별 업무와 연락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내부 직원과 더불어 위탁 및 외주 단체의 임무가 있는 경우 관리 조직에 포함할 수 있으며, 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이용 단체에 대한 공연장 관리 부분을 일부 위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단,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에서의 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한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므로, 현실적 안전관리 방법을 검토하여 위탁 관리를 결정함을 권장한다.

1 관리 조직도 예시 : 상주 관리 조직 및 인원이 명확한 공연장 테두리 수정



2 관리 조직도 예시 : 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대관 공연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



2) 담당자의 역할 및 임무 지정

- 공연장 총괄은 각 조직간 소통과 현장 통솔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고, 총괄과 더불어 각 조직의 담당자들은 관리 조직도에 조직별로 이름, 업무 등을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1 관리 조직 임무 예시 : 상주 관리 조직 및 인원이 명확한 공연장

관리 조직	책임자	인원	담당업무
무대기술부	000	00명	-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공연기획부	000	00명	- 공연 기획, 진행, 매표 등
관객관리부	000	00명	- 객석 구역 안전 관리, 관객 관리
시설관리부	000	00명	- 건축, 소방, 전기 등 시설 관리
안전관리팀	000	00명	- 전사 안전 관리 담당
운영지원부	000	00명	- 안전 예산 편성, 집행 지원

2 관리 조직 임무 예시 : 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대관 공연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

관리 영역	책임자	담당업무
무대시설	000	- 무대시설, 음향, 조명시설, 소방 및 대피시설 관리 - 무대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공연단체 안전교육 실시
	공연단체 위탁관리	- 공연 중 조명 및 음향시설 운영 및 관리 - 공연자 안전 관리
객석공간	000	- 피난 및 소방시설 자체 점검 - 객석시설 관리(객석의자, 출입문 설치 및 작동 상태)
	공연단체 위탁관리	- 관객 입·퇴장 관리 - 공연 중 객석 구역 안전 관리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체계 및 비상 연락망

- (비상 대응 조직 구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비상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각 조직의 고유 업무와 역할에 적합한 인력과 부서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 조직별 책임자 연락처와 조직 구성 인원 그리고 비상 조직의 담당 임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비상 대응 조직별 비상 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비상 연락망은 비상 대응 조직별 구성 세부 인원 에 관한 정보와 임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시 참고 사항]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재해대처계획에서 관리조직에 포함된 모든 인원으로 비상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공연 기간 등 모든 관리조직 인원이 공연장에 상주하지 않는 상황도 있으므로, 공연 기간에 상주하고 있는 공연단체와 공동으로 비상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유관기관 정보) 공연장 소속 지역의 지원 기관을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관별 부서 정보와 그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연장 운영 기관에서 전사적 협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정보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1 비상 대응 조직 구성 체계 예시

비상 조직	책임자	연락처	인원	담당 임무
총괄 책임자	000	000-000-0000	-	- 공연장 사용 중단 결정 및 대피 명령
사고진압반	000	000-000-0000	00명	- 화재·사고 초기 진압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
신고 및 협력반	000	000-000-0000	00명	- 관계기관 신고·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등
관객 대피반	000	000-000-0000	00명	- 관객 대피 안내·유도 및 출입구·동선 관리 등
응급 구호반	000	000-000-0000	00명	- 부상자 응급처치, 구호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 지원 등
기타 지원반	000	000-000-0000	00명	- 출연진 대피 안내, 현장 운영 지원 등
※ 공연 기간 중 비상 대응 조직 운영 계획 수립 가이드 - 위의 비상 조직은 공연장 관리조직에 따른 자체 대응 체계이며, 공연 기간에는 상주 공연단체의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임 - 공연단체의 총괄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도록 안내				

2 비상연락망 예시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부서	임무 및 역할
총괄 책임자	000	010-0000-0000	000000000	- 공연장 사용 중단 결정 및 대피 명령
사고 진압반	000	010-0000-0000	000000000	- 사고 진압 총괄
	000	010-0000-0000	000000000	- 무대 사고 대응
	000	010-0000-0000	000000000	- 객석 사고 대응
	000	010-0000-0000	000000000	- 기타 시설 사고 대응
관객 대피반	000	010-0000-0000	000000000	- 관객 대피 총괄
	000	010-0000-0000	000000000	- 로비 구역 관객 대피 관리
	000	010-0000-0000	000000000	- 객석 1층 구역 관객 대피 관리
	000	010-0000-0000	000000000	- 객석 2층 구역 관객 대피 관리
응급 구호반	000	010-0000-0000	000000000	- 응급 구호 총괄
	000	010-0000-0000	000000000	- 응급 처치 실시
	000	010-0000-0000	000000000	- 환자 이송 및 병원 인계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부서	임무 및 역할
신고 협력반	000	010-0000-0000	000000000	- 신고 및 협력 총괄
	000	010-0000-0000	000000000	- 신고 및 상황 보고
	000	010-0000-0000	000000000	- 대피 방송 실시
	000	010-0000-0000	000000000	- 긴급 차량 통로 확보
기타 지원반	000	010-0000-0000	000000000	- 출연진 관리 총괄
	000	010-0000-0000	000000000	- 출연진 대피
※ 위의 비상 조직은 공연장 관리조직에 따른 자체 대응 체계이며, 공연 기간에는 공연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비상 대응 인력을 추가하여 관리할 계획임				

3 유관기관 정보 예시

00시청	재난안전상황실	000-000-0000
00구청	재난안전상황실	000-000-0000
00구청	문화예술과	000-000-0000
00병원	응급의료센터	000-000-0000
00경찰서	상황실	000-000-0000
00소방서	상황실	000-000-0000
00소방서	00센터	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지사	000-000-0000
한국전기안전공사	00지사	000-000-0000
한국가스안전공사	00지사	000-000-0000
상수도사업본부	00사업소	000-000-0000

2) 공연 중단 관리 계획

- 공연 중 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기 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발생하면 진행 중인 공연을 중단하여야 하므로, 공연 중단 권한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연 중단 권한은 공연장 책임자와 공연단체 책임자에게 각각 주어져야 하며,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공연 중단이 결정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책임자의 공연 중단 관리 계획 예시

구분	공연 중단 관리 계획
공연장 책임자 지정	- 책임자(정) : 000 - 책임자(부) : 000 (책임자 부재 시 대체자 또는 권한 위임자)
공연 중단 기준	※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연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① 화재 : 공연장 내부 화재,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공연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관객, 출연자 안전사고로 피해자 발생 시 ※ 공연장 책임자의 공연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 징후의 경우에는 공연단체 책임자에게 위기 징후 확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공연 중단 체계	① 위기 징후 확인(화재 감지 신호, 공연장 직원 보고 등) ② 공연 중단 판단 ③ 공연 중단 및 관객 대피 명령
단계별 중단 조치	(1단계) 음향 감쇄 및 경고 방송 → (2단계) 공연 일시 중단 → (3단계) 공연 취소 결정 → (4단계) 관객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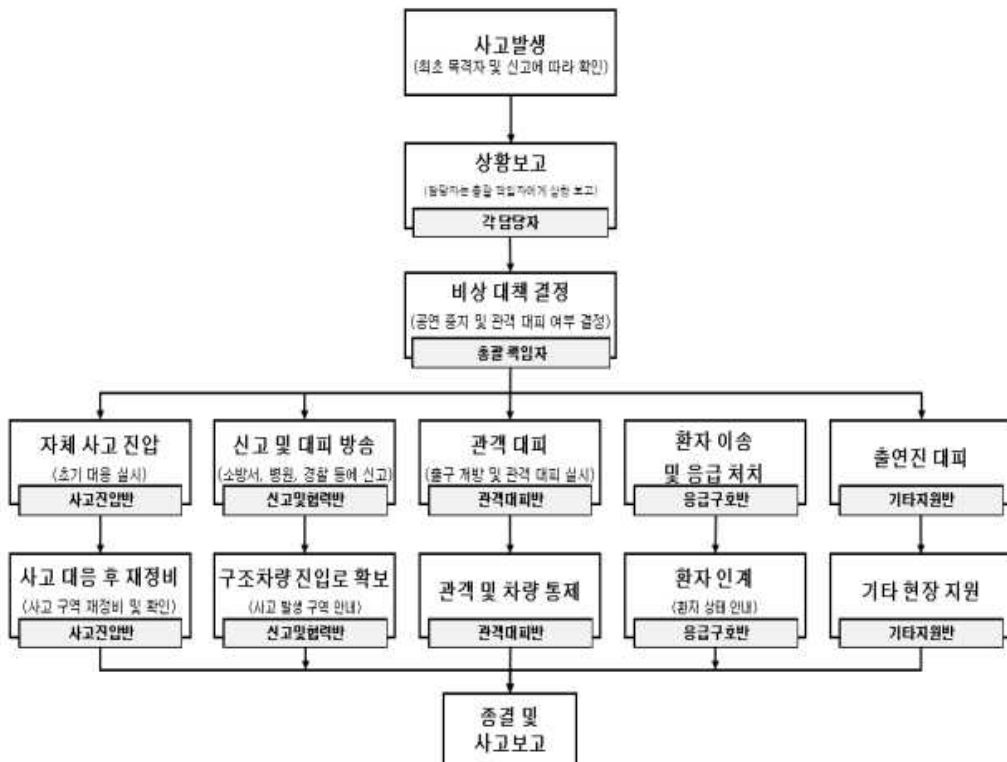
2 공연단체 책임자의 공연 중단 관리 계획 예시

구분	공연 중단 관리 계획
공연단체 책임자 지정	- 공연별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책임자 지정 예정
공연 중단 기준	※ 다음의 상황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연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① 인파 사고 : 관객 밀집 급상승, 수용인원 초과 징후, 이동 경로 막힘 ② 설비 이상 : 무대장치 결함 및 이상 작동, 특수효과 오작동 ③ 긴급상황 : 응급환자 발생, 무질서·폭력 징후, 관객 난입 등
공연 중단 체계	① 구역별 관리자 모니터링(공연장 소속 직원) ② 이상 징후 보고 (소속 직원 → 각 총괄 책임자) ③ 공연 중단 판단 ④ 공연 중단 단계별 조치
단계별 중단 조치	(1단계) 음향 감쇄 및 경고 방송 → (2단계) 공연 일시 중단 → (3단계) 공연 취소 결정 → (4단계) 관객 대피

3) 비상 상황별 조직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 (사고 대응 총괄 체계)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는 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의 징후가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 조직이 취하여야 할 행동 사항과 절차를 의미하며, 최초 발견자로부터 시작하여 상황 보고, 비상 대책 결정, 비상 대응 조직별 조치 시행을 거쳐 상황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별 조직 대응 체계) 공연장운영자는 내부 점검을 통해 각자가 비상 대응 조직 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영 여건과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공연장 운영 환경에 적합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사고 대응 총괄 체계 예시



2 주요 재해별 위기 대응 체계 예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공연장 내부 화재 발생 시)	비상 조직
- 화재 목격자는 초기 진화가 가능한 규모의 화재인 경우, 선 조치 후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화재 목격자는 초기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연락망에 따라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총괄 책임자는 초기 진화가 불가한 화재 발생 보고를 받으면, 즉시 공연 중단과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총괄책임자
- 사고진압반은 위험구역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대응한다.	사고진압반
- 신고 협력반은 비상 연락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고, 경보기 작동 및 피난 안내를 통해 안내요원 지시에 따라 외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신고협력반
- 관객대피반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관객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정해진 출입구로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즉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대피 완료 후 잔류 관객이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응급구호반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공연장 외부 화재 발생 시)	비상 조직
-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건축 방재실로부터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총괄 책임자는 화재의 규모와 위치를 판단하여, 공연을 중단과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총괄책임자
- 사고진압반과 신고 협력반은 화재 발생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경로를 확인 후, 비상 대응 조직에게 전파한다.	사고진압반 신고협력반
- 관객대피반은 전달받은 안전한 대피경로의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관객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 유도 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전달받은 안전한 대피경로로 출연진을 즉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대피 완료 후 잔류 관객이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응급구호반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안내 문구	
- (내부 화재로 대피 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외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화재 발생 확인 시) 현재 공연장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른 대피경로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총괄 책임자는 정전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비상 연락망을 통해 관계 부서에 확인 지시를 한다.	총괄책임자
- 신고협력반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고 관객이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자리에서 대기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신고협력반
- 사고진압반은 신속하게 정전의 원인(화재, 붕괴, 전기사고 등에 의한 정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사고진압반
- 총괄 책임자는 단시간 복구가 어려운 정전이라 판단하면, 공연 중단 결정과 관객 대피 안내를 지시한다.	총괄 책임자
- 관객대피반은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손전등 및 경광봉 등 안내용 장비를 갖추고 비상 위치로 이동한다. - 장기간 정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관객대피반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관객을 정해진 출입구로 대피시킨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대피 완료 후 잔류 관객이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응급구호반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안내 문구	
- (정전 발생 직후)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모두 제자리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스태프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비상 조명을 작동할 예정입니다.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 대피 필요)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천천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전 복구 후) 관객 여러분, 방금 전 발생한 정전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의 협조 덕분에 안전하게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공연이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최초 지진 인지자는 즉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 총괄 책임자는 즉시 공연 일시 중지를 선언하고 비상 상황 조치 계획을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 신고협력반은 지진발생에 대한 상황을 스크린 및 PA시스템을 통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소방서에 신고한다.	신고협력반
- 관객대피반은 관객이 몸을 숙이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자를 무대장치가 없는 곳으로 즉시 이동시켜 견고한 구조물 아래 몸을 낮추고 흔들림이 멈출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대피경로에 CCTV 등을 통해 낙하물, 구조물 손상 등을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 신고협력반은 흔들림이 멈추면 관객에게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집결지로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기타지원반
- 관객대피반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관객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정해진 출입구로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관객대피반
- 기타지원반은 출연진을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즉시 대피시킨다.	기타지원반
안내 문구	
- (지진동 발생 직후) 현재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때까지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가능한 경우 낮은 자세로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 (흔들림 종료 후 대피)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가까운 비상구를 통해 공연장 바깥 비상집결지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여진 발생 시) 현재 여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동을 멈추고 낮은 자세로 머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흔들림이 멈춘 후 안내에 따라 다시 이동을 재개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총괄 책임자는 응급조치를 위해 공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연 일시 중단을 지시한다.	총괄책임자
- 응급 구호반은 즉시 응급의료장비를 가지고 응급환자에게 접근하여 환자의 상태(의식, 호흡, 외상 여부 등)를 확인한다. -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 이송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병원 이송이 필요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면 신고협력반과 함께 119의 상황 조치 안내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응급구호반
- 신고협력반은 응급 구호반이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 119 신고 후, 응급 구호반과 119의 상황 조치 안내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신고협력반
- 관객 대피반은 응급환자 발생 구역에서 구급 차량 도착 지점까지의 환자 이송 경로를 확보한다.	관객 대피반
- 기타 지원반은 출연진에게 응급환자 발생 사실로 인한 공연 일시 중단을 알리고, 수습되기 전까지 잠시 대기 조치를 안내한다.	기타지원반
- 사고 진압반은 응급환자 이송 후, 해당 구역을 재정비하고 추가 부상자나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안내 문구	
- (환자 발생 직후)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객석 00 구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의료진과 안전관리요원이 즉시 출동하여 조치 중이니, 관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조를 위해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주변 통로를 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급 환자 조치 완료 후)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발생했던 응급환자 상황은 현재 안전하게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공연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	비상 조직
- 객석 및 로비 구역 등 관객 입·퇴장, 대기 공간에서의 관객 혼잡도를 상시 관찰한다. - 관객 혼잡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구역에서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관객 대피반
- 총괄 책임자는 공연 중 관객 혼잡에 의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연 일시 중단을 지시한다. - 총괄 책임자는 관객 혼잡이 해소되기 전까지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관기관 신고를 지시하고, 공연 완전 중단을 지시한다.	총괄책임자
- 관객 대피반 및 혼잡구역의 조직 구성원을 통해 관객 흐름을 분산시키고, 혼잡구역을 통제한다. - 관객 대피반 등 혼잡구역 주변의 조직 구성원은 확성기를 통해 압사 위험구역의 관객에게 보호 자세 안내를 한다. - 압사 위험구역에서 출구까지의 관객은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 안내하여 출구를 확보하고, 압사 위험구역으로 이동하는 관객을 통제한다.	관객 대피반 등
- 신고협력반은 관객을 안정시키고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내방송을 한다. - 총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유관기관에게 신고하고 지속 상황을 알린다.	신고협력반
- 압사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반은 응급처치 및 환자 구호 조치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구호반
- 기타 지원반은 출연진에게 관객 혼잡 발생 사실로 인한 공연 일시 중단을 알리고, 수습되기 전까지 잠시 대기 조치를 안내한다. - 관객 혼잡으로 공연 중단이 결정되면, 출연진을 대기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기타지원반
- 사고진압반은 관객 사고 대응 완료 후, 해당 구역을 재정비하고 추가 부상자나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사고진압반
안내 문구	
- (혼잡 예상 시)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연장 00구역에 관객이 몰리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주변 관객분들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동시 밀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혼잡 발생 시) 관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많은 인원이 밀집하여 압사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뒤쪽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공연장운영자는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법 제11조의6에 따라 즉시 재해대책계획에 따른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비상 연락망의 관할지자체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을 재해대책계획에 수립하여야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의 경우
- 공연 중에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연중에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

3.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려는 자는 재해 유형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서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안내서에서는 위험 요소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요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에 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공연장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연장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 등 일반 관리 사항

재해 유형별 세부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공통 관리 사항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등 관리 계획

- 면적당 소화기 비치 기준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화기 비치 기준]

- 보행거리 20 m 이내에 소형 소화기 설치
- 바닥면적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공간별로 설치
- 위와 관계없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 (공연장의 경우, 배전반실, 콘솔룸에 해당하며, 개별 분장실에도 소화기 1대 이상 설치)

- 화재 유형별 소화기 비치 기준 및 관리 계획(점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 유형별 소화기 종류 및 특징]

- A급(일반화재) : 나무, 종이,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 재가 남는 화재
- B급(유류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알코올과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아무 것도 남지 않는 화재
- C급(전기화재) :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전기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화재
- D급(금속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
- K급(주방화재) : 조리재료(식물성,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와 이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

[주요 소화기 종류]

- ABC 분말소화기 : A, B, C급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가장 보편적인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 B, C급 화재에 적합하며, 전기 화재 시 소화 후 잔여물이 없음
- 할론 소화기 : A, B, C급 모두 사용 가능하나, 현재 환경 문제로 생산이 중단됨
- HCFC, HFC 소화기 : 흔히 청정 소화기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A, B, C 모두 사용 가능하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 질식의 위험이 있음

- 공연장에서의 소화기는 ABC 분말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 설치를 장소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ABC 분말소화기는 무대, 분장실 등 복합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콘솔실, 배전반실 등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전기·전자 장비류가 밀집되어 분사 시 화재 발생 구역 외 인근 전기·전자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난, 유도설비(유도등, 경보기 등)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 유도설비 관리 계획 수립 가이드]

- 공연기간 중 공연단체 등 공연장 사용 단체에서 피난, 유도설비를 가려놓거나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방 관계 규정에 따라 공연장의 운영 및 시설 환경에 적합하게 3선식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적용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2.7.3.2 내용 참고)

- 비상경로(통로, 비상구 등)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경로 관리 계획 수립 가이드]

- 무대구역에서는 무대세트 및 장치 반입, 철거 시 대피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 공연장 내부에 소화전이 있으면, 소화전 인근에는 소화전 개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세트 및 장치류 등을 근처에 비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객석구역의 대피경로에 별도 관람석, 장비 설치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2 비상 대응 훈련 계획

- 공공 공연장의 경우 연 2회 소방 교육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훈련 계획 수립을 권장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따라서 공연장 상주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 대응 조직의 역할과 임무의 적정성 및 현실성 확보를 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3 공연 전 스태프 회의 시행 계획

- 공연 전 스태프 회의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위험 공연 연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점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상시 임무 등에 관한 역할 분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대관 공연단체로 비상 대응 역할을 위임한 경우, 필수로 해당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스태프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

- 스태프 회의는 공연단체에서 반입하려는 무대세트와 장치류의 안전 관리 사항과 공연 중 위험 요인 관리 대책, 비상시 대처 방법,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공연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 공연장운영자는 시설 환경 구조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공연단체는 공연 연출과 무대세트, 장치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연장에게 전달하여, 공연장 시설과 공연을 위한 외부 반입 장비 셋업, 연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스태프 회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2) 재해 유형별 세부 위험 요인과 그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1 화재 예방 및 관리 계획

- 공연장에서의 화재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엄격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화재 요인에 따른 관리 항목과 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하게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일반 화재	- 시설물 내 가연성 물질 보관 여부	☐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 인근 구역 순회 점검 ☐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상태 확인 점검 ☐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에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분장실에서의 화재 발생	☐ 분장실 전열기기 사용 불가 조치 - 전열기기 반입 여부 점검 - 전열기기 사용 금지를 위한 순회 점검 ☐ 분장실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상태 확인 점검 ☐ 분장실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분장실 사용자 대상 전열기기 안전사용 수칙 안내 ☐ 미사용 분장실 전원 차단
	- 분장실 흡연	☐ 분장실 금연 조치 - 흡연 감지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점검 -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한 순회 점검
	- 공연장 외부 화재 발생	☐ 공연장 외부 화재 발생 시 신호 및 정보 전달 체계 점검 ☐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자 내부 훈련
	- 기타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일반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전기 화재	- 전기설비 결함에 의한 화재	☐ 분전반 정기 점검 및 청결 유지 - 차단기 작동 상태 점검 - 탄화 현상 유무 점검 - 수분 침투 유무 점검 - 불필요물 비치 유무 확인 및 제거 ☐ 분전반 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 관계자 외 접촉 금지 및 잠금 상태 확인
	- 무대장치 과부하에 의한 화재	☐ 무대장치 정격 용량 확인 및 수용 가능성 검토 ☐ 차단기 용량 적정성 점검 ☐ 케이블 이상 유무 점검
	- 기타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전기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특수 효과 화재	- 불꽃 효과	☐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 사용 신고 유무 확인 ☐ 사용 전 설치 상태 점검 및 취급자 안전교육 시행 ☐ 소화기구 추가 비치 ☐ 효과 영향 구역 내 가연성 물질 제거 ☐ 위험구역 설정 및 작동 중 모니터링 ☐ 사용 후, 잔여 불씨 확인 점검
	- 화염 효과	☐ 가스 안전 수칙 준수 ☐ 사용 전 설치 상태 점검 및 취급자 안전교육 시행 ☐ 소화기구 추가 비치 ☐ 효과 영향 구역 내 가연성 물질 제거 ☐ 위험구역 설정 및 작동 중 모니터링
	- 기타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른 특수효과 화재 위험 요소 및 관리 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항목별 안전 관리 계획>

2 지진 발생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 계획

- 지진 발생으로 인해 공연장 시설물 낙하, 전도 등으로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본 안내서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평시 관리 항목과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무대 공간	- 구조물 및 건축물 붕괴 예방	☐ 상부 그리드, 갤러리 등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 ☐ 건축벽, 천장 마감재 등 점검
	- 설치물(세트, 장치, 소품 등), 적재물 등 낙하, 전도 예방	☐ 그리드 불필요물 확인 및 제거 ☐ 갤러리 낙하 방지턱 점검 및 관리 ☐ 공연 전 설치물 등 설치 상태 점검 ☐ 무게 중심이 높은 무대장치의 전도 방지 조치 점검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대피 중 머리보호 안내
	- 무대시설 충돌, 간섭, 파손 예방	☐ 조명 전원선 및 신호선 적층 또는 설치 상태 점검 ☐ 조명기구 안전고리 체결 등 낙하 방지 조치 확인 ☐ 음향기구 슬링 설치 등 낙하 방지 조치 확인 ☐ 상부 무대장치 이격거리 준수
	- 무대구역 대피 체계 확보	☐ 초기 지진 발생 시 무대에서 공연자 대피 안내 교육 ☐ 무대에서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의 대피경로 파악 (임시 구조물은 지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임시 구조물 설치 위치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대피경로 검토 필요) ☐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공연자에 대한 대피 지원 사전 협의
	-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라 무대공간에서의 지진 피해 예방 계획 추가	
객석 및 관객 대기 공간	- 객석 마감재 붕괴, 낙하 예방	☐ 객석 벽면, 부착물, 마감재 등의 균열, 파손, 이탈 여부 등 점검 ☐ 객석 천장 마감재 등의 균열, 파손, 이탈 여부 등 점검 ☐ 객석 천장 구조물 고정 상태 점검
	- 객석 조명기 등 설치 시설물 낙하 예방	☐ 객석 측 조명기 안전고리 체결 등 낙하 방지 조치 확인 ☐ 객석 측 프로젝터 등 낙하 방지 조치 확인
	- 객석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예방	☐ 객석 바닥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균열 발생 시 조치 ☐ 각 출입문 정상 개폐 상태 점검 및 조치
	- 관객 소지품 등 물건 낙하 예방	☐ 2층 이상 객석 안전난간 측 소지품 등 물건을 올려놓지 못하도록 사전 안내 ☐ 2층 이상 객석에서 아래층으로 소지품 등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연 중 지속 관리
	- 로비 등 관객 대기 공간에서의 전도 예방	☐ 공연 홍보물, 임시 부스 등 임시 구조물 전도 방지 대책 점검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 객석 구역 대피 체계 확보	☐ 초기 지진 발생 시 좌석에서 관객 보호조치 안내 교육 ☐ 전체 객석 구역에서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의 대피경로 파악 (임시 구조물 및 천장 대형 설치물은 지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대피경로 검토 필요) ☐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객의 대피 지원 사전 협의 ☐ 혼잡 예상 구역 파악 및 해소 방안 협의
	-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따라 객석 및 관객 대기 공간에서의 지진 피해 예방 계획 추가	

<지진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3 무대시설 및 조명·음향기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 공연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관리하는 시설물과 무대장치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장운영자는 위의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연장의 무대시설은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 상태를 확보하고 있으나, 시설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운용 영역에서의 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본 안내서에서는 공연장의 시설물과 무대조명·음향기구 등에 의한 위험 요인과 요소를 고려하여, 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구 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그리드 및 갤러리	- 중량물 설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 상부에 무대장치를 매다는 경우, 사용 한계 하중 사전 확인 ☐ 반입 구동 무대장치의 안전 정보 확인 (호이스트, 체인 안전울 등)
	- 물체 낙하 사고	☐ 그리드 및 갤러리 내 불필요물 확인 및 제거 조치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계 획
		☐ 그리드 및 갤러리에서 작업 시 공구 낙하 예방 조치 안내 및 관리
상부 무대 시설 일반	- 무대시설 작동 중 충돌, 간섭, 파손 예방	☐ 상부 무대시설 작동 전 장애물 걸림 등이 없는지 확인 후 작동 조치 ☐ 상부 무대시설 작동 중 인근 무대장치와의 간섭 여부 지속 확인 후 조치 ☐ 상부 무대시설 작동 전, 영향을 받는 구역 내 출입 통제 조치 (셋업 기간에 해당하며, 리허설 완료 후 안전 확보되면 통제 해제) ☐ 무대시설 관리자 외 조작 금지 조치
	- 무대시설 파손, 고장 사고 예방	☐ 설치하려는 무대장치 등의 사용 하중 사전 확인 ☐ 설치하려는 무대장치 등의 규격 사전 확인 ☐ 사용 하중 및 규격이 확인된 무대장치 등의 현장 설치 상태 점검
하부 무대 시설 일반	- 셋업·해체 등 작업 기간 중 승강무대로 추락 사고 예방	☐ 승강무대가 작동하여 추락이 우려될 경우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관계자를 배치하여 접근 통제 조치 ☐ 승강무대가 복귀하여 무대바닥에 추락 위험이 제거되면, 통제 조치 해제 ☐ 승강무대의 작동 중, 무대면과 다른 높이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청각적 알람 표시 ☐ 무대시설 관리자 외 조작 금지 조치 ☐ 공연예술 작업자 대상 공연장 승강무대 위치 및 작동 중 위험 요인, 관리 조치에 관한 교육 시행
	- 리허설, 공연 중 승강무대 추락 사고 예방	☐ 공연 연출에서 공연장의 승강무대 사용 여부 사전 확인 ☐ 출연자 동선과 추락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 확보 협의 * 추락 위험구역 : 깊이 2 m 이상의 개구부 * 안전거리 확보 권고 사항 : 위험 경계선으로부터 1.8 m 이상 ☐ 추락 위험구역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연출의 경우, 공연단체에 다음의 관리 조치 요구 ※ 추락 사고 위험 공연 관리 조치 -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출연자 대상으로 리허설 전 실제 위험구역 확인 및 주의 사항 교육 실시 - 리허설 기간에는 추락 보호조치 시행(통제 설비, 경보기 설치, 보호 매트 등 설치) - 공연 중에는 해당 연출 장면 등장 전, 무대 상주 스태프를 통해, 추락 위험구역 주의 안내 조치
	- 이동무대 작동에 의한 충돌 사고 예방	☐ 이동무대 이동 경로에 이상 돌출부, 바닥 단차 확인 후 작동 ☐ 이동무대 작동 중 인접 무대장치 등의 간섭 여부 확인 후 작동 ☐ 이동무대 작동 시, 작업자 접근 통제 조치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계 획
무대 조명 시설	- 조명기구 낙하 예방	☐ 매달린 조명기구 안전고리 체결 상태 점검 ☐ 조명타워 등 전도 방지 조치 점검
	- 조명 케이블 적층 및 고정 풀림 사고 예방	☐ 조명기구 전원선 및 신호선 정돈 상태 점검 (정돈되지 않은 케이블에 의한 간섭 사고 발생 위험 관리) ☐ 조명기구 전원선 및 신호선 고정 상태 점검 (벨크로 타이 파손에 의한 전원 케이블 풀림 사고 위험 관리) ☐ 조명봉 작동 시, 케이블 적층 상태 점검(케이블 바스켓, 케이블릴 이상 적층에 의한 위험 관리)
	- 조명기구 전기 안전사고 예방	☐ 조명기구 소켓 접속 상태 점검 ☐ 조명기구 먼지 제거 등 청결 상태 점검
무대 음향 시설	- 스피커 낙하 예방	☐ 어레이 스피커 낙하 방지 점검 ☐ 어레이 스피커 고정 상태 점검
	- 바닥 스피커 전도 예방	☐ 스피커 2단 이상 적층 시, 무게 중심 확인 및 고정 등 전도 방지 조치 점검
	- 모니터 스피커 케이블 걸림 사고 예방	☐ 바닥 음향 케이블 정리 정돈 및 동선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출연 및 작업자 동선에 위치하는 경우, 걸림 방지 조치
음향 반사판	- 음향반사판 충돌, 파손, 낙하 등 설치 사고 예방	☐ 음향반사판 프레임 및 고정부 점검 ☐ 음향반사판 설치 중, 간섭 확인 점검 ☐ 무대바닥에 이상 돌출부 및 단차 확인 및 조치
	- 음향반사판 전도 등 설치 후 사고 예방	☐ 음향반사판의 바닥 수직·수평 상태, 멈춤(고정) 장치 등 점검 ☐ 음향반사판 설치 후, 의도치 않은 작동 방지 조치(전원 차단 등) ☐ 안전 거리 표기, 관계자 외 접근 제한 등 필요시 시행
전기설 비	- 시설물의 과부하 예방	☐ 공연장 전기설비의 허용 전력에 관한 정보 제공 ☐ 조명, 음향, 영상, 특수효과 등 외부 반입 장치의 사용 전력량 사전 확인 ☐ 사용 전력량 계산 결과 검토에 따라 장치 반입 및 설치 승인 조치
- 위 항목 외, 공연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무대장치에 관한 관리 계획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공연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무대장치의 안전 관리 계획>

4 특수효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특수효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공연장의 운영 및 시설 형태에 따라, 안전을 위해 특수효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에서 원천 사용 금지의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특수효과 사용 안전 일반	- 피난안내를 통해 관객에게 특수효과 사용 안내	☐ 공연 전 관객 대상으로 피난안내 시, 특수효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안내
	- 가연성 물질 사용 제한	☐ LPG, 부탄 등 가연성의 가스용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불꽃 및 화염 효과	- 효과 사용 제한	☐ 실내 공연장에서의 불꽃 효과는 콜드 스파크 장치만 반입·사용을 허용한다. ☐ 실내 공연장에서는 화염 효과 사용을 제한한다. ☐ 그 외 불꽃 및 화염 효과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공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꽃 및 화염 효과 사용 안전 수칙 -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경찰서에 사용 허가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불꽃 및 화염 효과 전담 취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무대 상·하수에 스테프를 배치 및 소화기를 지급한다. - 무대 상·하수 스테프를 통해 공연 중 상시 관찰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시 즉각 초동 조치할 수 있도록 소방 교육 및 훈련을 한다. - 불꽃 및 화염의 영향 구역에는 발화 위험이 없어야 하며, 효과 사용 인근 무대바닥에는 틈이 없도록 방염 물질로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 작동 안전 확인	☐ 조작자는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효과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무대 위 출연자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작동한다.
연무 효과	- 운용 안전	☐ 연무 효과 장치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한다. ☐ 연무 효과로 인해 피난구와 위험구역이 식별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 연무 효과의 영향을 받는 구역에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노출 유해성에 따른 추가 대책을 수립한다.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연무 효과는 낮은 구역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질식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환기 등 조치한다. ☐ 바닥 연무 효과(드라이아이스, LSG 등) 사용 시, 객석구역으로 연무가 축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고압 분사 연무(CO2 jet 등)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 무대 위 출연자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작동한다. ☐ 연무 효과 사용에 의한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로 구역을 지속적으로 청소한다.
	- 연무 효과 사용 물질 안전	☐ 연무액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 여부를 확인한다. ☐ 고압가스용기는 이동시, 보관시, 설치시 등 모든 과정에서 전도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며, 보관 중인 가스용기에는 보호캡을 설치한다.
레이저 효과	- 운용 안전	☐ 레이저 시스템은 전문가가 운용하도록 한다. ☐ 비상정지 기능을 통해, 이상 작동 및 위험 상황 시 즉시 레이저 투사를 중단한다. ☐ 레이저 빔에 대한 안전 구역을 설정하여, 관객과 공연자의 눈과 피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관객 머리 위 3 m 높이로 유지한다. ☐ 반사 위험 물체 및 표면에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 장비 안전 관리	☐ 레이저 장치는 벽면 및 기타 물체와 15 cm 이상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레이저 장치가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 시간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 미사용 시 레이저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한다.
드론 연출 및 촬영 등	- 사용 전 안전 관리 체계 확인	☐ 드론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와이어 연출, 와이어 카메라 등)으로 전환을 우선 검토한다. 드론 사용이 불가 피하면 다음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드론 사용 전 점검 • 드론 운용 자격증 보유자가 작동 • 사업자등록증 확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드론 사용 계획서 검토 - 사용 목적 - 드론 주요 성능 및 기능 : 무게, 크기, 비행시간, 자동 복귀 기능 여부 등 - 비행계획 : 실내 비행경로, 안전구역 설정 계획 - 조작자 정보 : 자격 정보, 경력 사항 등 ☐ 드론은 시야 확보가 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며, 어둡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구분	관리 항목	관리 계획
물 사용 효과	- 효과 사용 제한	☐ 물 사용 공연 시, 사용단체로부터 사용 계획(구역, 용량, 효과 범위, 방수 조치, 배수 조치, 관리 담당자 등)을 제출 받고, 공연장의 내부 검토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 100 PSI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는 물품(워터건 등) 또는 장비(워터 캐논 등)는 사용 전 테스트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을 승인한다. (또는 원천 사용 제한을 한다.)
	- 운용 안전	☐ 공연에 사용하는 물은 정수 처리한 상수원수(수돗물)를 사용하고, 사용 후 배수 처리하거나 별도 정수 시스템을 갖추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바닥과 신발 재질의 마찰을 고려하여 물에 의한 미끄러짐 방지가 되도록 한다. ☐ 설계한 영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설계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한다.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특수효과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

5 무대세트 및 장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

- 공연을 위한 무대세트 및 장치(가설구조물, 특수효과, 소품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 안내서에서는 무대장치에 의한 위험 요인과 요소를 고려하여, 그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단, 무대장치는 공연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공연단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연장의 안전 관리 계획에는 공연단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그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a) 외부 반입 무대세트 및 장치의 적정성 검토 체계

- 공연단체가 반입하려는 무대세트가 공연장에 반입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므로, 공연장운영자는 공연단체에게 시설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반입구 크기, 공연장 무대시설 허용하중, 무대바닥 설치 허용하중, 조명 회로 정보, 음향 시스템 정보, 분전함 허용 전류량 등)
- 공연장운영자는 외부 반입 무대세트 및 장치가 공연장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해야 하므로, 공연단체로부터 제작 설계 등에 따른 하중 계산서와 세트, 장치물의 치수 정보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세트 및 장치 반입 전, 공연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반입 승인 여부를 공연단체에게 알린다.

- 공연장운영자는 반입 기간 중 공연장 현장에서 승인된 무대세트와 장치와 일치하게 반입되고 있는지, 설계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구분	반입 전 확인해야 하는 정보	공연장 검토 내용
반입 물품 정보	☐ 무대조명, 음향, 영상 장치 리스트(하중, 출력, 치수 등) ☐ 트러스, 레이허 등 사용 정보 ☐ 체인 호이스트 사용 정보 ☐ 특수효과 장비 리스트(불꽃, 연무, 레이저 등) 및 사용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무대세트 규격(가로, 세로, 높이)	반입되는 물품의 적정성 검토
무대세트 및 장치의 하중 산출 정보	☐ 무대세트 설계 하중 정보 ☐ 장치봉에 매다는 무대세트 등의 하중 합계 정보 ☐ 조명봉에 매다는 조명기구의 하중 합계 정보	자체 시설물에 고정 시 하중 안전성 검토
무대세트 치수	☐ 장치봉에 매다는 무대세트의 치수 정보 ☐ 무대바닥에 설치하는 무대세트의 치수 정보	자체 시설물에 설치 가능성 검토

<공연장에서 무대세트 및 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정보>

b) 공연단체의 안전 관리 사항

- 공연단체에서 반입하여 설치하는 무대세트와 장치에 관한 안전 관리는 일반적으로 공연단체에 있으나, 공연장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연장운영자는 공연단체에 다음의 주요 관리 사항을 전달하여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주요 안전 관리 사항
출연자 동선에 위험 요인 확인 및 조치	☐ 출연자 이동 동선에 구동 무대장치류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구동 무대장치류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면, 이동 동선을 변경하거나 작동 순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 고정 무대장치의 돌출부에 의한 충돌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 돌출부 제거 : 제거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제거 - 돌출부 마감 조치 : 제거할 수 없으면 충격 보호재(EVA) 등으로 마감 ☐ 출연자 이동 동선에 케이블류 등 걸림 요소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 바닥에 있는 케이블류 : 고무 덮개, 바닥 전선 보호덮개 설치 등 - 무대장치 중간에 연결된 케이블류 : 케이블 배선 정리 및 연장 케이블 활용으로 위치 조정 등
출연자 간 부딪힘 예방 조치	☐ 출연자 등·퇴장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 가능한지 검토한다. ☐ 등·퇴장 이동 동선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백스테이지에 대기 장소를 두고 무대 상주 스태프를 통해 등·퇴장 순서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 리허설 과정에서 출연자간 충돌 위험이 허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연출의 영역에서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 출연자 이동 동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치 사항	주요 안전 관리 사항
고소 무대세트 (2 m 이상) 위에서의 공연 안전 확보	□ 고소 무대세트 위에 출연자가 올라가야 하는 연출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 무대 디자인으로 인해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한다. ※ 공연자 추락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 • 공연장 현장에서 실제 위험구역을 확인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 고소 무대세트 위에서 격렬한 안무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리허설 등 현장 연습 기간에는 낙하 구역 안전매트 설치, 하네스 착용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중 연출용 하네스를 착용하고 와이어로프를 장치에 체결하도록 조치한다.
곡예 공연 등 위험 연출	□ 공중 곡예를 하는 경우, 공중 연출용 하네스를 착용하고 와이어로프에 매달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단, 관객 구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중 곡예는 공중 연출용 하네스를 와이어로프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 공중 연출용 하네스 착용이 어려운 공중 곡예의 경우에는 사전 연습을 철저히 하고, 총감독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안전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 공중 곡예자의 컨디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연 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연출 제외 등을 고려한다.
공연예술 작업자 보호구 착용 조치	□ 무대 반입, 설치, 해체 작업 현장에서의 공연예술 작업자 대상으로 작업 유형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을 조치한다. - 하역, 반입 작업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착용 - 고소작업 :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대 착용 - 전기작업 : 안전모, 절연장갑 착용
※ 공연장 자체 설비인 승강무대를 활용한 연출이 있는 경우에는, p. 38의 “하부 무대시설”의 관련 사항을 따른다. - 출연자 동선과 추락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 확보 협의 *추락 위험구역 : 깊이 2 m 이상의 개구부 *안전거리 확보 권고 사항 : 위험 경계선으로부터 1.8 m 이상 - 추락 위험 구역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연출이 불가피할 경우, 공연단체에 다음의 관리 조치 요구 ※ 추락 사고 위험 공연 관리 조치 •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출연자 대상으로 리허설 전 실제 위험구역 확인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 리허설 기간에는 추락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통제 설비, 경보기 설치, 보호 매트 등 설치) • 공연 중에는 해당 연출 장면 등장 전, 무대 상주 스태프를 통해 추락 위험구역을 안내 하여 인지시킨다.	

<공연단체의 주요 안전 관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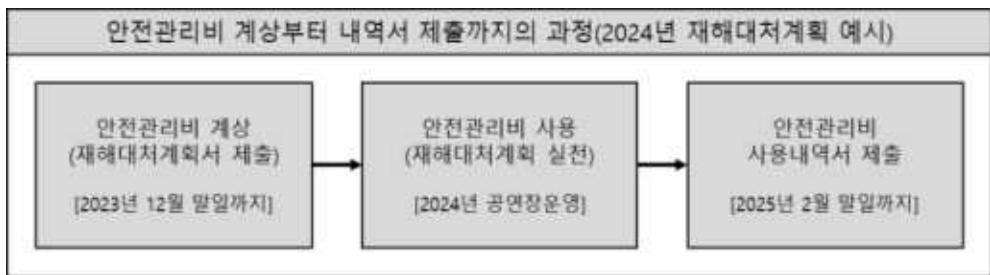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5(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다음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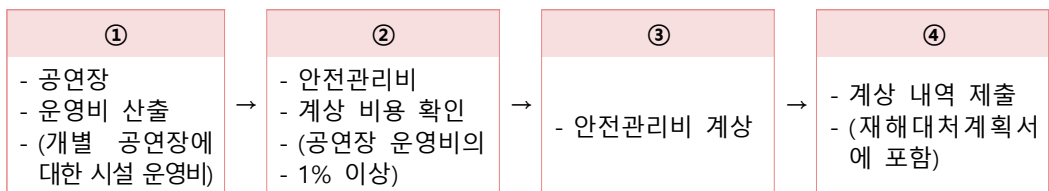
1)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비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공연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단, 객석 수가 500석 미만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은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작성하여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위한 절차는 다음을 참고한다.



2 공연장운영비 산출 가이드

- 공연장운영비란, 연간 공연장(무대시설, 객석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구 분	세부 내용(예)
인건비	- 공연장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 인건비
	- 공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 담당자 인건비
	- 시설관리자 인건비
경상사무비	- 인쇄 및 복사비
	- 회의비
	- 통신요금
관리운영비	- 업무운영비
	- 임대료
	- 외주 용역비
	-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시설유지·보수비	- 무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 객석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 각종 점검에 따른 비용
사업비	-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대관 등 기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비용 제외)

- 500석 이상의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하나의 공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공연장이 하나의 공연 시설에 포함되어, 공연시설 전체에 대해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 공연법 상 안전관리비는 객석 수 500석 이상의 등록된 공연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연장운영비 또한 개별 공연장 마다 별도로 산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연장 운영 예산은 공연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되기에 개별 공연장에 대한 운영비 산출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확실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공연장의 면적, 업무 범위 등에 따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시)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의 총 예산 중 공연장 운영비 산출하기]

(1)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 예산 중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만 구분

- 등록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이며, 연간 예산을 세부 공연장 별로 나눠서 산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 관리 예산 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즉 시설을 운영/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유지·보수비, 사무비(행정, 홍보, 기획 등) 등을 우선 구분한다. (단, 공연시설 예산에 포함된 공연 단체 예산 및 자체 공연 제작비용은 제외한다.)

(2) 개별 공연장운영비 산출

- “(1)”에 따라 연간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예산 비용이 분리되었다면, 전체 시설 연면적 중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공연장에 대한 면적 비율을 파악한다. 그리고 “개별 공연장 연면적/공연시설 연면적”에 따른 비율로 예산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산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예산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 적용하고, 공연장운영비의 경계가 불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면적 비율로 예산을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3 안전관리비 산출 가이드

- 공연장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지출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계상 이전에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셋업 및 철수, 진행 단계에서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연장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며, 업무를 위해 소용되는 예산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

안전 관련 업무 예시

-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업무
- 법정 안전검사 등 안전점검
- 안전 회의(공연 전 회의, 스태프 회의, 관객안전관리 회의 등)
- 안전교육 및 훈련(관객 안내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 교보재 등)
- 피난 안내도, 소방시설, 무대작업 등 안전 관련 비품 비치
- 관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개인보호장구 관리 및 점검

4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적정성 검토

- 공연장운영자등은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용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안전교육 및 훈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운영비와 안전관리비가 산출되면, 안전관리비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내역을 계상한다.

<예시> 복합 공연시설에서 개별 공연장에 대한 연간 운영비 및 안전관리비 비율 확인

(step.1) “공연시설” 연간 총 운영비 확인

- “공연장운영비”에는 공연제작을 위한 비용과 공연단체 운영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공연장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해당하는 예산만 포함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 공연시설 전체 예산 중 공연장 운영에 대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발체하였다. (단, 공연단체의 상주인력 인건비, 공연제작 비용(출연료, 무대세트 제작) 등은 공연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비 목	세 목	예 산 (백만원)	내 역(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1,300	(공연단체 인건비 제외)
	일용임금	200	공연 안내원 운영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	전기세, 냉난방비 등
	임차료	100	공연장비 및 악기 렌탈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30	청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15	A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비용
	복리후생비	20	(공연단체 제외)
	관리용역비	1,600	청사 미화 및 경비 관리 등
	자산 취득비	700	공연장 운영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비
	고용부담금	120	연금지급금 및 법정부담금
건설비	환경개선비	150	B 공연장 환경개선비
	개보수비	500	A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공연 폐기물 처리비	50	공연 폐기물 처리비
합 계(총 운영비)		5,285	-

(step.2) “개별 공연장(A/B/C)” 운영비 산출

공연시설의 운영비 예산은 공연장 개별로 편성되지 않고, 전체 공연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개별 공연장 운영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아래와 같이 면적 비율에 따라 공연장 운영비를 배분하였다.

- 범용 운영비 산출 : 공연시설 운영비 중 개별 공연장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운영비를 말하며, 총 운영비에서 개별 공연장의 직접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다.

총 운영비	개별 공연장 확인 비용(백만원)		범용 운영비
5,285 (백만원)	A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비용	15	4,620 (백만원)
	B 공연장 환경개선비	150	
	A 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500	

- (A 공연장) 운영비 산출 참고

공연시설 연면적 (a)	개별 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할당액 (e=d×c)	개별 공연장 전용 운영비 (f)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e+f)
33,000 m ²	18,000m ²	0.55	4,620 백만원	2,541 백만원	515 백만원	3,056 백만원

- (B 공연장) 운영비 산출

공연시설 연면적 (a)	개별 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할당액 (e=d×c)	개별 공연장 전용 운영비 (f)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e+f)
33,000 m ²	4,300m ²	0.13	4,620 백만원	600 백만원	150 백만원	750 백만원

- (C 공연장) 운영비 산출

공연시설 연면적 (a)	개별 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할당액 (e=d×c)	개별 공연장 전용 운영비 (f)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e+f)
33,000 m ²	1,400m ²	0.04	4,620 백만원	185 백만원	0 원	185 백만원

(step.3) “개별 공연장(A/B/C)” 안전관리비 최소 계상 비용 확인

- “개별 공연장의 안전관리비” 계상비용이 “개별 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인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A 공연장)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확인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3,056,000,000원	1%	30,560,000원

- (B 공연장)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확인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750,000,000원	1%	7,500,000원

- (C 공연장)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확인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185,000,000원	1%	1,850,000원

(step.4) “개별 공연장(A)”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 “개별 공연장의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이 “개별 공연장 운영비 결정액”의 1% 이상이 되도록 다음해의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구 분	비용(원)	산출 근거(비고)
인건비*		
안전총괄책임자	6,160,800	102,680원/일×20일×12개월×1인×25%
안전관리담당자	7,392,960	102,680원/일×20일×12개월×2인×15%
객석안전요원	7,350,000	10,000원/시간×5시간×122.5일×6인×20%
안전관리조직 업무 수당	3,000,000	
운영비		
소화기 구입	3,000,000	청정소화기(5개), 고체에어로졸소화기(3개)
피난안내 제작	5,000,000	피난안내도/안내방송
안전모 구입	100,000	10,000원×10개
안전화 구입	800,000	80,000원×10개
안전교육 및 훈련	200,000	안전총괄책임자(1인)
	400,000	안전관리담당자(2인)
안전교육 교보재	1,000,000	
자체 안전검사 위탁	4,000,000	2,000,000원(반기) × 2회
건설비		
개보수비	5,000,000	안전진단 지적사항 개보수
합 계(총 안전관리비)	43,403,760	-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겸직으로 안전관련 업무 비율 적용, 객석안전요원의 업무는 관객 안전과 편의 제공이므로 전체업무의 안전관련 업무 비율 적용

- 다음 해 A 공연장의 안전관리비 총 금액은 43,403,760원으로 최소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30,560,000원 이상임을 확인.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은 각 공연장마다 예산 비목 및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양식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공연법에 따른 계상 비율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신고한 내역에 따라 해당 연도 공연장 운영기간 동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한 지출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당해연도에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상 내역을 참고하여 공연장 운영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실 지급된 내역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2) 안전관리조직 구성

1 안전관리조직 관련 규정 : 공연법 제 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단, 객석 수가 500석 미만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관리조직 구성 기준]

-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요건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장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 되는 만큼 위험 상황 시 공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전관리조직 지정 이력 및 업무 수행 계획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제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계획은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계획

1 안전교육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계획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강사요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연장운영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자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연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내용으로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교육 대상에는 출연자뿐만 아니라 스태프 및 작업자도 포함된다.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자 안전교육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안전교육 가이드와 교육 영상자료 콘텐츠 배포, 그리고 온라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공연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구분	교육 구분	실시 방법	공연장운영자 관리사항
자체 교육	- 자체 집합교육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공연장 현장 안전교육 가이드 등을 통해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자체 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보관 (교육 결과 보고서 등)
	- 영상자료 활용 교육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안전교육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위탁 교육	- 공연안전지원센터 - 사이버아카데미	-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온라인 교육 수료증(55분) 제출 - 수료증 확인 후 현장 안전교육(5분 이상)을 실시 (해당 공연의 위험요인 및 공연 연출 등 위험요소 등)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확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공연장 운영자가 정하여 관리)

- 고위험 공연 연출이 포함된 공연의 경우, 관계 출연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연장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관리 대책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등의 현장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3.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하부 무대시설 안전 관리 계획과 고소 무대장치에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추가 교육 시행 필요

3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시행 계획

-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강사 자격 요건]

- 공연 안전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전총괄책임자의 안전교육 주기와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주기 및 교육 시간
- (최초 교육)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다음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주기와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주기 및 교육 시간
- (최초 교육)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 (다음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외부 전문기관(공연안전지원센터)으로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현황을 재해대처계획에 추가한다.

4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관객 관리 및 대피,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주요 역할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 관객안전요원은 공연장에서 배치 위치에 따른 관객 관리 임무 숙지와 비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공연장 현장에서 하우스매니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객안전요원 현장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예시]

- 교육 및 훈련 강사 : 하우스매니저 000
- 교육 및 훈련 시기 : 공연장 지정 구역 배치 전
- 교육 및 훈련 내용 :
 - 지정 구역별 관객 관리 주요 임무
 - 비상연락망 공유
 - 비상시 대처 요령
 - 소품 지급 및 무전 채널 확인 등

- 관객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안전교육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객안전요원 고용 시, 해당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하여 기초 안전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계획 수립 시 이를 참고한다.

[관객 관리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 공연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비법정 교육 : 관객관리자 안전교육
- 교육 시간 : 약 1시간
- 교육 내용
 - 관객안전요원의 정의 및 특징
 - 관객안전 위험도에 따른 주의사항
 - 비상시 행동요령 및 응급사고 조치
 - 관객 안전관리 요령
 - 여름철 야외공연 관객 관리 요령

4) 피난안내

1 피난안내 관련 규정 : 공연법 제11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피난안내도

-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및 위치) 모든 등록 공연장은 공연장의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 ▶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 크기 :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
 - 재질 :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 ▶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 ▶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예시>

3 피난의 안내

- (피난안내 대상 및 시기) 모든 등록 공연장은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 ▶ 피난안내 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 (장애인 대상 피난 안내) 공연 전 티켓 예매 정보 등을 통해 장애인 할인 대상 관람객을 확인하여, 관객안전요원이 해당 관람객에게 직접 다가가서 피난 안내와 피난 지원에 관한 계획과 비상시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객에 대한 피난 안내 계획]

- 관객안전요원이 공연 전 좌석에서 직접 안내 실시(청각장애인일 경우, 피난안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전달)
- 피난 지원을 담당하는 관객안전요원을 소개하고, 공연장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전달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비상 시 보호자의 대응 요령 및 관객안전요원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안내

4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

-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사전 조사) 대관계획서 및 공연기획서 등을 조사하여, 공연 유형을 분석하고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입장이 예상되는 공연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연별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연별 장애인 등 대피 지원계획 수립 방안]

- 티켓 예매 정보를 조사하여,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객 수를 조사
-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관객안내요원 추가 배치 여부 결정
-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는 관객안전요원에 대해 공연 전 추가 교육 실시

- (장애유형에 따른 대피 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티켓 발행 정보 및 현장 확인 등에 따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 비상시 해당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의 장애 유형에 따른 비상 대피 요령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장애 유형	비상 대피 요령
시각장애	(대피 지원) 직원 1명이 2명의 시각장애인을 담당하여 대피 (대피 방법) - 현장에 들어가면 소리로 관객안내요원의 존재를 알린다. - 자연스럽게 정확한 어조로 말하되 고함을 치지 않는다. - 방해물에 대해 보조자의 신체적 반응을 살피며 피난하기 때문에, 계단, 좁은 길, 경사로 등의 방해물을 미리 고지해주도록 한다. - 간결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지체장애	(대피 지원) 직원 1명이 1명의 지체장애인을 담당하여 대피 (대피 방법) - 돕기 전에는 항상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 휠체어나 보조기구 없이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 있는지, 양 팔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잠깐 서 있거나 걸어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지 미리 질문하여 파악한다. - 휠체어나 보조기구 없이 관객안내요원이 직접 대피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아기를 안듯이 한 손은 다리를 들고 다른 한 손은 등을 받치고 안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청각장애	(대피 지원) 직원 1명이 4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하여 대피 (대피 방법) - 모든 판단을 시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비청각장애인보다 훨씬 불안해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여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숙지한다. - 스스로 피난이 가능하나, 불안 증상에 의해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객안전요원이 지원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기타*	비상집결지까지 대피 유도 (*기타 : 대피안내에 따라 이동 보조 수단 없이 스스로 대피 가능한 자)

5.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무대시설 안전관리

① 공연장 무대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단체가 안전한 무대 환경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보유 무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연법 안전규정에 따라 무대시설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취약 무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 재해대처계획에는 인명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대시설 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설치가 이뤄지는 무대시설의 안전성을 항상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로부터 공연예술 작업자와 공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해대처계획을 통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리 계획 작성]

- 직전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 일자와 진단 종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 계획 일정과 종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정기 안전검사 : 등록일로부터 3년, 직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정밀안전진단 : 등록일로부터 9년, 직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재해대처계획이 적용되는 연도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계획을 포함한다.
 - ▶ 자체 안전검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주기, 검사 항목 및 내용, 검사 부서, 검사 결과 관리 계획 등

2 무대시설 운용 안전에 관한 일반 사항

- 공연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대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무대시설 작동 권한은 공연장 관계자(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 관계자가 변경되더라도 관련 안전 수칙을 항상 준수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대시설 운용 안전 수칙]

- 공연 기간에는 허가된 공연 관계자만 무대 출입이 가능하다.
- 무대시설은 공연장 관계자가 작동하며, 관계자 외 작동을 금지한다.
- 무대시설 작동 전, 인접 시설 등에 의한 간섭이나 의도치 않은 하중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는 경우에 작동한다.
- 무대시설은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동하며, 무대세트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대 현장 감독과의 소통에 따라 작동하여야 한다.
- 공연 준비 기간에 상부 무대시설을 작동하는 경우, 그 아래에 사람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공연 준비 기간에 하부 무대시설을 작동하는 경우, 통제 설비와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승강무대 바닥 위에 세트를 설치하거나, 장비류가 올려져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짐 및 굴림이 없도록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 무대시설 작동을 금지한다.
- 무대시설 작동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정지를 실시한다.
- 무대구역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상부 무대시설과 하부 무대시설을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다.

3 하부 무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사항

- 공연장에서는 하부 무대시설 개구부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부 무대시설별 주요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위험 요인으로부터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 무대시설	주요 위험 요인
연주승강무대 (Orchestra Lift, Orchestra Fit)	- 객석에서 무대로 이동 시 개구부 식별 미흡으로 추락 위험 - 무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개구부 식별 미흡으로 추락 위험 - 리허설 및 공연에서 장면 전환 연출 목적으로 작동 시 추락 위험
승강무대 (Main Lift, Stage Lift)	- 무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개구부 식별 미흡으로 추락 위험 - 리허설 및 공연에서 장면 전환 연출 목적으로 작동 시 추락 위험
※ 안전 관리 대책 : 본 안내서 <공연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무대장치의 안전 관리 계획> 표 내용 참고	

- 본 안내서에서는 “3절.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p. 38)”에서 [하부 무대시설]의 주요 위험 요인별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위의 주요 위험 요인을 참고하여 공연장 시설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부 무대시설 추락 사고 주요 사례]

- ('08년) 공연장에서 행사 리허설 중 주요 인사가 연주승강무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11년) 공연장에서 공연 리허설 중 지휘자가 연주승강무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14년) 리허설 중 출연자가 무대 하부 공간으로 추락하여 부상
- ('18년) 무대 작업 중 승강무대로 추락하여 사망
- ('25년) 리허설 중 무용수 2명이 연주승강무대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
- ('25년) 공연 전 무대시설 점검 중 조안무가 1명이 하강 중인 연주승강무대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

2) 무대 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 지침

공연 현장에서의 무대 설치 및 해체 시 요구되는 안전 관리 사항은 “3절.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외 무대 설치 및 해체 관련 관리 지침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고소작업 안전 지침

구분	안전 지침 내용
고소작업 일반 안전 지침	- 고소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한다. - 고소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대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 고소작업에는 필수 도구와 장비만 사용하며, 도구와 장비는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호주머니는 비워둔다. -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다리 작업 안전 지침	-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한다. - 사다리는 항상 사용 전에 점검을 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러진 부분이나 가로대가 빠진 부분 등 결함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A형 사다리는 3.5 m 이하의 높이에서만 사용한다. -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 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한다. -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 m 이상 2 m 미만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2 m 이상 3.5 m 이하인 경우 최상부와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고소작업대 (유압 리프트 등) 안전 지침	- 고소작업대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작동 및 안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운전자는 안전 훈련을 받아 작업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자재 등이 조작 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 작업 높이를 높이기 위해, 고소작업대 위에 추가 발판 또는 사다리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안전난간대 위에 앉거나 서거나 기어오르지 않는다. - 승강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작업대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만 이동한다. - 작업대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대 이동 경로에 이상 돌출부 또는 장애물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고소작업대 위에는 작업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기름 등 미끄러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전도 방지 장치 등)을 변형시키거나 기능을 해제시키지 않는다. - 머리 위쪽에 충돌 등의 요인이 있는지 작업지역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구분	안전 지침 내용
이동식 틀비계 안전 지침	- 이동식 틀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가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 이동식 비계의 적재하중은 250 kg 이하로 유지한다. -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 이동식 틀비계 전도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작업대 위에 사람이 올라탄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한다. - 작업대 이동 경로에는 이상 돌출부 또는 장애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이동한다.

2 전기 장치 및 공구 안전지침

구분	안전 지침 내용
전동 공구 안전 사용 지침	- 작업 전 사용 공구의 외관, 방호덮개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 전 전동 공구의 전원 배선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 전동 공구는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적용된 회로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 전동 공구는 안전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한다. - 파편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전동 공구 작업 시, 보호안경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 말려 들어가기 쉬운 옷이나 머리카락 등은 공구의 회전부위에서 떨어져 있도록 한다. - 이상 소음이나 과열 발생 시 전원을 차단 후 점검하여 조치한다.
전기 장치 전원 연결	- 전기 장치의 전원 연결은 공연장의 승인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분전함에서 전원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 전기 기술 자격증 보유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 분전함에서 2차 전원을 연결하는 경우 380 V는 R, S, T상과 접지로 연결하고(3상4선), 220 V는 R, S, T 중 하나와 N상, 그리고 접지로 연결한다. (2상3선) - 전기 장치의 꽂음 접속기는 파손되거나 헐겁지 않아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사용한다. - 땀이나 물에 젖은 손으로 꽂음접속기를 접속하지 않는다. -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접지를 실시한다. - 전원을 분리하는 경우 전선을 당기지 말고 꽂음 접속기를 잡고 분리한다.

3 리깅 안전 지침

구분	안전 지침 내용																	
리깅 일반 안전 지침	- 벨트 슬링은 외관상 결함(찢어짐, 풀림, 마모, 오염 흔적 등)이 없어야 하며, 안전 하중 라벨을 식별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 벨트 슬링의 사용하중은 매다는 방법, 가닥 수 및 매다는 각도를 확인하고 기본 사용하중에 모드계수(M)을 곱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table> <tr> <th>곧게 매달기</th><th>대각 매달기</th><th colspan="3">바구니 모양 매달기</th></tr> <tr> <th>M=1</th><th>M=0.8</th><th>M=2</th><th>M=1.4</th><th>M=1</th></tr> <tr> <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양방법에 따른 안전하중]	곧게 매달기	대각 매달기	바구니 모양 매달기			M=1	M=0.8	M=2	M=1.4	M=1							
곧게 매달기	대각 매달기	바구니 모양 매달기																
M=1	M=0.8	M=2	M=1.4	M=1														
<table> <tr> <th>0°</th><th>30°</th><th>45°</th><th>60°</th><th>90°</th><th>120°</th></tr> <tr> <th>100%</th><th>95%</th><th>90%</th><th>85%</th><th>70%</th><th>50%</th></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매달기 각도에 따른 안전하중]	0°	30°	45°	60°	90°	120°	100%	95%	90%	85%	70%	50%						
0°	30°	45°	60°	90°	120°													
100%	95%	90%	85%	70%	50%													
장치봉 리깅	- 트러스는 외관상 부식, 파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트러스 고정은 볼트와 너트를 통해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클립과 압착 슬리브(스플라이싱) 등을 통해 와이어로프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심בל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의 꺾임을 방지한다.																	
	- 장치봉에 무대세트 등을 매다는 경우, 매달기 안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 줄 와이어로프 : 안전율 10이상, 여러 줄의 와이어로프 안전율 6이상) - 와이어로프, 턴버클 및 새클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하나의 장치봉에 설치하는 트러스 등 무대세트 구조물은 구조물의 무게중심이 장치봉과 수직 선상에 놓이도록 한다. - 여러 장치봉에 설치하는 트러스 등 무대세트 구조물은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 다수 장치봉을 통한 동기 운전 시 주의사항 • 무대세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하려는 장치봉의 동기 운전 상태를 점검한다. • 무대세트 구조물이 무대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장치봉에 고정한 후, 안전 높이(0.5 m 미만)까지 장치봉을 천천히 상승한다. • 안전 높이에서 장치봉과 무대세트 구조물의 리깅 부품(슬링, 와이어로프 등)이 수직 상태로 연결되었는지 점검하고, 장치봉과 무대세트 구조물에 휨 또는 변형이 없는지 확인한다.																	

구분	안전 지침 내용
	• 안전 높이에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 설계 높이까지 천천히 상승시키며, 이상 유무를 항시 확인한다. (무대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전반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설계 높이에서 장치봉의 리미트를 설정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 시험 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무대용 체인 호이스트 리깅	- 공연장운영자는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상부 그리드 공간에서 체인 호이스트 리깅 포인트를 설정해야 한다. - 체인 호이스트를 공연장 상부 그리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관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체인 호이스트의 전원은 반드시 접지되어야 한다. - 체인 호이스트 설치 후, 작동 신호에 따라 상승·하강 동작이 올바른지 점검한다. - 하나의 체인 호이스트에 구조물 및 장치류를 매달 경우, 매달린 구조물 및 장치류의 무게중심이 호이스트 체인과 수직 선상에 있어야 하며, 흔들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스피커 호이스트 등 목표 높이까지 상승 후 공연 중 작동하지 않는 구조물 및 장치류의 경우에는, 목표 높이에서 추가 벨트 슬링과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 안전장치를 체결한다. - 다수의 체인 호이스트를 통한 동기 운전이 요구되는 경우, “장치봉 리깅”의 다수 장치봉을 통한 동기 운전 시 주의 사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4 무대조명 안전 지침

구분	안전 지침 내용
설치 전 점검	- 무대조명의 요크와 클램프는 부식,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각 부품간 고정 상태에 이상 없어야 한다. - 무대조명의 배선은 절연체가 손상되었거나 외관상 열화 흔적이 없어야 한다. - 무대조명의 꽃음 접속기는 파손 등의 손상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 접속부(금속체)가 접속기 형태에 따라 정확하게 결착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무대조명 설치 및 해체	- 무대조명 작업은 무대바닥에서 이뤄지도록 작업 순서를 조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동식 틀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 무대조명 설치 및 해체는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작업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무대조명을 장치봉 및 트러스 등의 구조물에 매달 경우 클램프를 걸어둔 상태에서 안전고리를 우선 체결하고 클램프 볼트를 조여 고정한다. 해체 시에는 이를 역순으로 진행한다. - 무대조명의 전기 연결 및 해제는 전원이 차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 디밍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 무대조명 전기 연결 시, 반드시 꽃음 접속기를 잡고 콘센트에 꽂거나 빼도록 한다. - 무대조명이 타 물체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 설치한다. 특히 무대막 등이 할로겐·텅스텐 조명기와 닿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 파(Par) 조명기와 같이 조명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장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무대조명 케이블 마감	- 무대조명 설치 후, 케이블이 인접 시설물 및 장치류에 간섭되지 않도록 장치봉 또는 트러스 등에 밀착하여 고정한다. - 구동 장치봉 또는 트러스에 조명 전원 배선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동 높이를 고려하여 배선 길이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배선에 작용하는 물리적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벨크로 타이를 최대한 좁은 간격으로 설치한다. - 무대조명 배선 고정을 위한 벨크로 타이는 금속 조임장치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벨크로 타이를 배선 도체나 절연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 1바퀴 이상 감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대조명 케이블은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길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장치봉 또는 트러스에 무리하게 감아서 전기적 안전성을 낮추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무대조명 연장 케이블의 접속부는 관계자 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는 구역으로 두거나, 전기 박스 및 안전 커버 등으로 보호한다. - 바닥 무대조명을 설치하거나, 무대조명 케이블이 무대바닥에 놓이게 되는 경우, 고무판 또는 보호덮개 등으로 케이블을 보호한다.

5 무대음향 안전 지침

구분	안전 지침 내용
설치 전 점검	- 스피커 고정 브라켓은 부식, 균열, 휨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 스피커의 파워콘은 균열, 파손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 스피커 리깅 안전율이 10 이상 되어야 하므로, 이에 적합한 리깅 도구를 선정한다. (한 줄로 매다는 경우의 안전율은 10 이상)
무대음향 설치 및 해체	- 하나의 체인 호이스트를 통해 스피커를 리깅하는 경우, 스피커 각도 설정 완료 후 슬링과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 안전장치를 체결한다. - 바닥에 스피커를 쌓아 올리는 스테킹으로 설치하는 경우, 스피커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바닥에 스피커를 풀대로 설치하는 경우, 풀대의 다리를 최대한 펼친 상태로 놓고 설치한다. (스피커 하중에 적합한 풀대를 사용한다.) - 앰프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오디오 케이블을 꽂지 않도록 주의한다. - 스피커 연결 후 최초 테스트를 하는 경우,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스피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한다.
최대 볼륨 설정	- 스피커로 인한 최대 음압은 115 dB(A) 이하가 되도록 볼륨을 조정한다. (최대 음압 기준을 높여야 하면 공연장 관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소음의 노출기준
무대음향 케이블 마감	- 모니터 스피커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고무판 또는 보호덮개 등으로 배케이블을 보호한다. - 무대음향 연장 케이블의 접속부(파워콘)는 관계자 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는 구역으로 두거나, 전기 박스 및 안전 커버 등으로 보호한다.

6 하역 및 운반 안전 지침

구분	안전 지침 내용
화물차량 하역	- 하역장의 화물차량 진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역하여 동시에 여러 무대세트 및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경사로에 화물차량 주차 시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한다. - 화물차량이 반입구 접근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하역장 및 반입구에는 관계자 외 접근을 통제한다.
건설기계 사용 안전	- 크레인, 지게차 사용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규정을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참고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등
운반	- 무대세트 및 장비 등의 운반 경로에는 단차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통로에 장애가 되는 물품을 정리하고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게 청결한 상태에서 운반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 - 대피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반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 - 인력 운반 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운반 작업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무게중심의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여 운반한다.

6.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1) 객석구역 수용인원 산출

① 객석구역 최대 수용인원

- 객석 구역 최대 수용인원은 아래 표의 지정좌석[A], 비지정 좌석[B], 오케스트라석 [C] 중 적용된 좌석 형태에 따른 산출 값의 합계[A+B+C]와 이동 경로 폭에 따른 산출 인원[D] 중 적은 인원으로 적용한다.
- 객석 구역의 최대 수용인원을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대관 단체, 공연단체 등)가 공연장 사용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대관 규정 및 시설정보에 포함하고, 최대 수용인원의 초과 입장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분		수용인원 산출 가이드
지정 좌석 [A]	고정 의자	- 객석 고정 의자의 총 수량
	이동형 의자	- 좌석 통로(좌석 전·후 간격 0.85 m 이상)와 객석 통로 확보 후,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의자의 총 수량 ※ 관련 근거 : 공연장 조성 매뉴얼 <표11> 객석의자 표준 고려사항
비지정 좌석 [B]	스탠딩 관람 구역	-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객석 구역의 수용인원은 객석 바닥면적(펜스 설치 면적 등 제외) 1 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용인원을 산출하도록 한다. ※ 관련 근거 : 입석 관람객을 위한 최대 권장 밀도 준용,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6th edition
	벤치형 좌석	- 긴 의자 형태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 m로 나누어 얻은 수로 산출한다. ※ 관련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오케스트라석 [C]		- (의자가 고정인 경우) 고정 의자 총 수량 - (의자가 비고정인 경우) 오케스트라 피트의 설계 하중과 규격을 고려하여 최대 의자 설치 수량 - (스탠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케스트라 피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4명과 최대 설계 하중에 따른 인원 중 적은 인원 적용
이동 경로 폭 [D]		- (계단을 포함하고 있는 출구) 출구 폭 7.6 mm당 1명 /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 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 폭 5.1 mm당 1명 - (평지에서의 출구) 출구 폭 5.1 mm당 1명 /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 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 폭 3.8 mm당 1명 ※ 관련 근거 : IFC section 1005, Means of Egress Sizing (피난로의 용량 산정)

2 스탠딩 관람 구역의 안전관리

- (스탠딩 관람 구역 수용인원) 스탠딩 관람 구역의 수용인원은 객석 바닥면적(펜스 설치 면적 등 제외) 1제곱미터당 4명¹⁾으로 하여 산출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 분리) 열광적인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는 스탠딩 관람 구역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탠딩 관람 구역 분리 계획 수립 시, 다음을 참고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 분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관객 관리 인력의 모니터링 : 모든 관객의 이상 행동과 증상 등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함
- 관객 사고 시 공연 중단 체계 확보 : 관객 사고 발생 시, 관객 관리 인력이 사고 발생 위치까지 신속히 이동하고, 관객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통제 관리 체계 확보 필요
- (스탠딩 관람 구역의 출입구 너비 기준) 스탠딩 관람 구역의 인원 1명당 출입구 너비 5.1 mm를 적용한다. 단, 출입구의 최소 너비는 1.5 m²⁾ 이상으로 한다. [500명을 수용하는 스탠딩 관람 구역의 출입구 너비의 합계는 2,550 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적용 시에는 각 출입구의 너비는 1,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의 정보 표시) 스탠딩 관람 구역의 출입구에는 다음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에 표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

- 구역 식별 표시 : 스탠딩 관람 구역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으면, 구역이 식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관람석 입장 구역에서 위치 식별이 되도록 표지판 또는 높은 깃대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최대 수용인원 정보 : 스탠딩 공연 출입구에는 스탠딩 구역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 공연 주의 사항 : 공연 중 관객을 밀거나, 안전 펜스 위에 올라가는 등의 위험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스탠딩 관람 구역의 관객 밀집도 관리) 스탠딩 공연 구획 내에서도 공연 중에 무대와 가까운 쪽에 관객 밀집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파 밀도 ³⁾	안전관리 내용	공연 중 조치 가이드
4~6명/m ² 이하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실행함	-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현장 통제 관리 실시
6명/m ² 초과	- 인파사고의 위험이 있음	- 공연 일시 중단 후 안내방송으로 밀집도 해산 조치

1) 참고 : Guide to Safety at Sports Grounds, 6th edition, 입석 관람객을 위한 최대 권장 밀도 준용

2) 참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3) 참고 :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2024년 서울연구원, <표4-15> 인파사고 위험도

2) 객석구역 안전 점검

- 공연장 객석 구역에서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는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공연장 관계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점검 대상	주요 점검 사항
이동 경로	- 객석 구역에서 외부 안전한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가 막히거나 잠겨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 이동 경로에 물품 및 임시구조물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없는지 점검한다.
출입문	- 출입문이 항상 개방될 수 있도록 출입문 주변에 구조물 및 물품 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점검하며, 출입문의 각종 요소 부품(손잡이, 잠금장치, 경첩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객석 내부 공간	- 고정 좌석은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비고정식 의자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공연장의 경우, 비고정식 의자 설치 후, 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끼리 결속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스탠딩 객석 구역을 허용하는 공연장의 경우, 스탠딩 객석과 무대 사이에 통제 설비(안전펜스 등)를 올바르게 설치하였는지 점검한다. - 공연 전·후 객석 내부 공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객석 내부 안전난간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에스컬레이터	- 관객 대기 공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 및 검사 주기에 따라 관리한다. - 평소보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거나, 핸드레일의 속도가 스텝과 맞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에 점검을 요청하거나 보수한다.
로비 공간	- 피난안내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물이나 음료 등에 의한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부품이 온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통로 유도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계단 난간, 복층 난간 등에 유격 등에 의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외관상 균열, 파손 등이 없는지 점검한다. - 관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통제 설비 또는 추락 보호 장치(안전 네트 등) 등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공연 전 허가되지 않은 부스, 포토존 및 판매대 등의 임시 구조물의 설치 행위가 없는지 점검한다.
기타	- 비상 안전 물품(확성기, 랜턴, 신호봉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3) 주요 구역별 관객 안전 관리 계획

1 로비 공간

- 공연 관객 대기 공간인 로비에서의 관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으므로, 공연장운영자는 이를 참고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분	관객 관리 지침
관객 대기 중	- 관객 입장 전까지 출입구를 통제한다. - 지정 좌석이 없는 공연이 진행될 경우, 출입구에서의 혼잡 예방을 위해 통제 설비(차단봉 등)를 설치하는 등, 질서정연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안전난간에 기대는 행위를 하는 관객이 있으면 통제 안내를 한다. - 계단 구역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관객이 있으면 통제 안내를 한다. - 티켓박스 및 물품보관소 등의 이용 관객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차단봉 등 통제 설비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 로비 공간에서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객 대기 구역 및 대기 줄 위치를 설정한다. - 이상 행동 관객으로 다른 관객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관객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안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객석 구역 책임자에게 보고 후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관객 입장 중	- 관객 입장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하고 관객 입장을 유도한다. - 각 게이트 담당자는 입장권을 확인하고, 지정 좌석의 구역으로 입장 안내한다. - 지정 좌석이 없는 공연이 진행될 경우, 대기 줄의 앞사람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관객 입장 완료	- 입장 지연 관객은 공연장과 공연단체에서 협의한 사항에 따라 입장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 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예 : 입장 제한 조치, 지연 관객 별도 좌석 입장, 중간 휴식시간 중 입장 등)
관객 퇴장 중	- 객석 출입구부터 건물 외부 출입구의 문을 개방한다. -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경우, 안전한 퇴장을 위해 관객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 질서정연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상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관객이 뛰지 않도록 구두로 지속 안내하고, 뛰는 관객에 대해서는 지목하여 주의 안내를 한다. - 객석 출입구부터 건물 외부의 출입구까지의 이동 경로에 관객 혼잡이 있는지 항상 관찰한다. - 관객 혼잡 발생 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고 뒤따르는 관객이 혼잡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관객 비상 대피 지시 확인 후	- 관객 대피 지시에 따라 외부로 이어지는 모든 출입구를 개방한다. - 대피 계획에 따라, 관객을 분산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비상 상황별 대응 조치에 따라 관객 행동 요령도 같이 안내한다. - 대피 중 예상치 못한 관객 혼잡이 발생하면, 근처의 다른 출입구까지의 경로로 우회하여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2 객석 내부 공간

- 공연장 객석 공간에서의 관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으므로, 공연장운영자는 이를 참고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분	관객 관리 지침
관객 입장 중	- 객석 조명을 켜서 관객의 이동 시야를 확보한다. - 객석 출입구 근처에서 지정 좌석으로 관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안내한다. - 관객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객이 있으면, 좌석 위치까지 이동을 도와준다. - 2층 이상의 객석 전면의 안전난간으로 관객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다.
관객 입장 완료	- 공연 전 피난안내를 시행한다. - 공연 중에는 객석 내부 공간을 항상 관찰하여, 관객 질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연 중 객석 내부 공간에서 관객 이상 행동, 응급환자 발생, 출연자 돌발행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객석 구역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상황 대응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3절의 비상시 하여야할 조치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 공연 중 관객 이상 행동 시, 관객을 공연장 밖으로 퇴장을 안내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객석 구역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이상 행동으로 관객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연 일시 중단 조치 검토 등) - 2층 이상의 객석 구역에서 아래층으로 물건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주변에 물건을 올리는 행위가 없는지 지속 관찰하고 통제한다.
관객 퇴장 중	- 객석 조명을 켜서 관객의 이동 시야를 확보하고, 좌석 끝의 관객부터 가까운 출입구로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관객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 2층 이상의 객석 전면의 안전난간으로 관객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다.
관객 비상 대피 지시 확인 후	- 관객 대피 지시에 따라 객석 조명을 켜고, 모든 출입구를 개방한다. - 대피 계획에 따라, 관객을 분산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비상 상황별 대응 조치에 따라 관객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4) 관객 안전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정보

- 공연장에 하우스매니저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우스매니저의 정보와 임무, 역할 그리고 안전교육 수료 이력 등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하우스매니저는 객석 구역에서의 관객 안전관리 역할을 담당 또는 총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다.

구분	주요 내용
하우스매니저 정보	- 공연장 소속 하우스매니저 :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
임무 및 역할 예시	- 공연별 공연단체 매니저와의 업무 협의 - 관객안전요원의 배치 및 교육 - 객석 구역에서의 관객 안전 관리 총괄
교육 수료 이력	- 하우스매니저가 받은 교육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예시] 2025년 하우스매니저 안전교육 수료(2025년 8월 25일, 공연안전지원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2025년 10월 10일, 00소방본부)

2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관객안전요원 배치 계획

- 공연 장르 및 관객 유형을 고려하여 관객 안전 관리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공연장의 객석 구조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한다.
- 공연장에서 관객안전요원을 직접 배치하지 않는 공연일 경우에는, 대관 계약 등의 조건에 따라 공연단체에서 별도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서를 추가할 수 있다.

주요 구역	관객안전요원 배치 계획	주요 임무
객석 구역 출입문	- 객석 1층 출입구 : 00명 ~ 00명 - 객석 2층 출입구 : 00명 ~ 00명 - 객석 3층 출입구 : 00명 ~ 00명 ※ 공연별 관객이 입장하지 않는 객석 층은 통제 조치 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음	- 객석 출입문 통제, 티켓 검수 - 비상시 객석 출입문 개방 및 외부 출입구까지 대피 유도
로비 구역	- 00명 ~ 00명 ※ 공연별 공연단체 매니저와 협업하여 운영 인력 추가 배치 예정	- 비상시 로비 출입구 개방 및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 유도
객석 내부	- 객석 1층 출입구 : 00명 - 객석 2층 출입구 : 00명 - 객석 3층 출입구 : 00명 ※ 공연별 관객이 입장하지 않는 객석 층은 통제 조치 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음	- 객석 위치 안내, 객석 모니터링 - 비상시 가까운 출입구로 대피 유도
※ 대관 공연 시 참고 사항 공연단체와의 대관 계약 등에 따라 공연장에서 관객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공연에 해당할 경우, 공연단체에 객석 구역별 관리 인력을 지정하도록 위임 관리 예정		

5) 관객 혼잡 예방 계획

-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이 특정 구역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평시에 공연장의 건축 및 객석 구조 환경을 고려하여 관객 혼잡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관객 혼잡 예방 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내부 객석 구조, 건축 구조(주 출입구 및 직통계단 등), 관객 심리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의 관리 역량에 범위에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혼잡 예상 원인	검토 사항	혼잡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
공간 구조로 인한 혼잡	- 객석 및 건축 구조상 혼잡 예상 구역 확인	- 관객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혼잡구역 분산 유도
관객 심리에 의한 혼잡 (상시)	- 좋은 관람 구역 선점을 위한 경쟁	- 비지정 좌석의 관객 관리 계획 수립 - 관객안전요원 및 통제 설비 등을 활용한 질서유지
관객 심리에 의한 혼잡 (비상시)	- 적극적인 사람을 따르려는 추종 본능 - 입장 경로로 퇴장하려는 귀소본능 - 위험 지역에서 멀어지려 하는 퇴피 본능	- 상황에 적합한 비상 안내방송 - 올바른 피난 유도를 위한 관객안전요원 교육

1 공간 구조상 혼잡 예상 구역 확인

- 객석 및 건축 구조상 혼잡 예상 구역에 대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공연장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혼잡 예상 구역을 참고할 수 있다.

[공연장 시설에서의 관객 혼잡 예상 구역 예시]

- 출입구 : 객석 출입구, 건물 출입구, 직통계단 출입구 등 병목현상 발생 위험구역
- 통로 교차 및 합류 구역 : 객석 통로 교차 지점, 대피경로 중간에 있는 객석 출입구 등 관객 합류에 의한 위험구역

- 공간 구조에 따른 혼잡 예상 구역을 고려하여, 대피경로를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비지정 좌석의 관객 관리 계획

- 비지정 좌석으로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관람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의한 혼잡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관객 규모를 고려하여 입구별 분산 입장, 입장 대기열 관리를 위한 대기 동선 확보 등의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또한, 입·퇴장 중 관객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추가 인력에 대한 배치 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지정 좌석 공연에서 안전한 관객 입·퇴장을 위한 가이드]

- **출입구별 입장 대기열 관리** :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로비 측에 차단봉을 설치하여, 관객을 일렬로 대기시킨 후, 앞쪽부터 순차적 입장하도록 안내
- **출입구 동시 개방** : 관객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 출입구만 먼저 개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출입구에 배치한 관객안전요원의 무전 신호로 출입구 동시 개방하여, 천천히 순차적으로 입장 유도
- **입장 중 객석 내부 공간 안전 관리** : 객석 내부 공간에서 관객이 뛰지 않도록 안내방송과 관객안내요원의 통제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객석 내부 공간에서 관객 혼잡이 예상되면 입장을 잠시 중단 후, 내부 통제 조치를 통한 혼잡상황 해소
- **공연 중 객석 내부 공간 안전 관리** : 공연이 시작되면 관객 이동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객석 구역의 이상 징후를 관찰
- **공연 종료 후 관객 퇴장 관리** : 공연 종료 후, 모든 출입구를 개방하되 좌석 구역별 출구를 안내하여 분산 퇴장을 유도

3 관객안전요원 교육 및 훈련

- 관객안전요원에 관한 사항은 본 안내서 "4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고한다.

4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 조치

-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비상 대응 조직별 행동요령은 본 안내서 <다중운집 인파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 조직의 행동 요령에 따른다.